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147-01

2015. 12.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미 복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윤 진 (초청연구원)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4
- 3. 선행연구 5

제2장 농업분야 정책자금 운용 현황

- 1. 농업재정투융자 현황 9
- 2. 농업정책금융 공급실태 16

제3장 농업금융 여건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 1. 농업금융의 대내외 여건변화 47
- 2.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55

제4장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실태

- 1. 농업정책금융 융자조건 63
- 2. 농업정책금융의 제도 변화 81

제5장 농업정책금융 개선 방안

- 1. 개선과제 89
- 2. 개선방안 91

부록 1. 중소기업정책금융 정책자금 지원 요약 101

부록 2. 농업부문 주요 융자사업 융자조건 111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최근 5년간 보조금 예산 추이	11
표 2- 2.	농식품부 소관 2016년 예산안 내역	12
표 2- 3.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예산 추이	12
표 2- 4.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안 현황	13
표 2- 5.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별 용자 현황	16
표 2- 6.	농업정책금융 규모 추이	17
표 2- 7.	국가 전체 정책금융 규모 추이	17
표 2- 8.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14년말 대출잔액 기준)	19
표 2- 9.	이차보전 사업내용	20
표 2-10.	농업부문 이차보전 사업내역 및 예산추이	23
표 2-11.	2014년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용자조건	24
표 2-12.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26
표 2-13.	농신보 보증 규모(2014년 말 기준)	27
표 2-14.	부분 보증 운용 현황	28
표 2-15.	기준 보증료율	29
표 2-16.	신용조사 방법	30
표 2-17.	금액별 보증잔액(건당)	30
표 2-18.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	31
표 2-19.	구상채권 회수율	32
표 2-20.	기금사업 종류	34
표 2-21.	FTA 기금 재원 및 용도	35
표 2-22.	FTA 기금 관리기관	36
표 2-23.	FTA 기금 대출취급기관	36

표 2-24.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채원 및 용도	37
표 2-2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리 및 사업 담당	39
표 2-26.	농지관리 기금 채원 및 용도	44
표 2-27.	농지관리 기금 사업별 관리·지원 담당	45

제3장

표 3- 1.	소득분위별 부채비율 추이	53
표 3- 2.	주·부업별 부채비율 추이	54
표 3- 3.	자급농가의 부채관련 주요 변수 추이	54
표 3- 4.	정책금융의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58
표 3- 5.	신용등급별 정책금융 분담 구조	61

제4장

표 4- 1.	이자율별(0~1%) 용자사업 구분(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64
표 4- 2.	이자율별(~2%) 용자사업 구분(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65
표 4- 3.	이자율별(~3%) 용자사업 구분(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67
표 4- 4.	상환기간별 용자사업 구분	68
표 4- 5.	원예시설 관련 유사사업 비교	70
표 4- 6.	원예시설 관련 세부 용자조건	71
표 4- 7.	축사시설 관련 유사사업 비교(사업조건)	72
표 4- 8.	축산 관련 세부 용자조건	73
표 4- 9.	가축분뇨 관련 유사사업	73
표 4-10.	가축분뇨 관련 세부 용자조건	74
표 4-11.	농가의 연간 이자부담	75
표 4-12.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사업('15년 8월 적용)	83
표 4-13.	농업정책 시설자금 추가 금리인하 사업('16년 1월 적용)	84
표 4-14.	금리인하 추가비용 변화	85
표 4-15.	정책자금 기준 금리	86
표 4-16.	정책자금 사업별 기준 금리	8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농업정책금융 지원규모 추이	3
----	----	----	----------------------	---

제2장

그림	2-	1.	연도별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국가 예산 대비 비율	10
그림	2-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융자액 비중 추이	15
그림	2-	3.	농업정책자금 재원별 추이	20
그림	2-	4.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추이	22
그림	2-	5.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기준금리	22
그림	2-	6.	농신보 보증절차	27
그림	2-	7.	보증료율 변동 내역 (개인, 1억 원 이하 기준)	30
그림	2-	8.	현재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 (2014년 말 잔액 기준)	33
그림	2-	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보조사업 지원 체계	38
그림	2-	1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사업 지원체계	39
그림	2-	11.	융자금 지원체계	40
그림	2-	1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체계	41
그림	2-	13.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 체계	41
그림	2-	14.	농지매입비축사업 지원 체계	42
그림	2-	15.	농지연금 사업 지원 체계	42
그림	2-	16.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체계	43
그림	2-	1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원 체계	43

제3장

그림	3-	1.	중앙은행 금리 추이	48
그림	3-	2.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49
그림	3-	3.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이	50

그림 3-4.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51
그림 3-5. 소득분위별 부채액 추이	52
그림 3-6. 중소기업·벤처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 ('11년)	61
그림 3-7.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62

제4장

그림 4-1. 농가의 평균자본수익률 추이	76
그림 4-2. 전·겸업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76
그림 4-3. 품목별·경지규모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77

제5장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적 대상농가의 유형	96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업부문의 특수성으로 정책금융의 역할 중요

- 농업금융은 농업부문 및 농업 경영체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자금공급 및 투자확대로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게 됨. 농업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농업발전 수준이 달라지기도 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은 투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농업금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내적, 외적 자본제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음.
- 농업금융에서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은 자본제약에 의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 즉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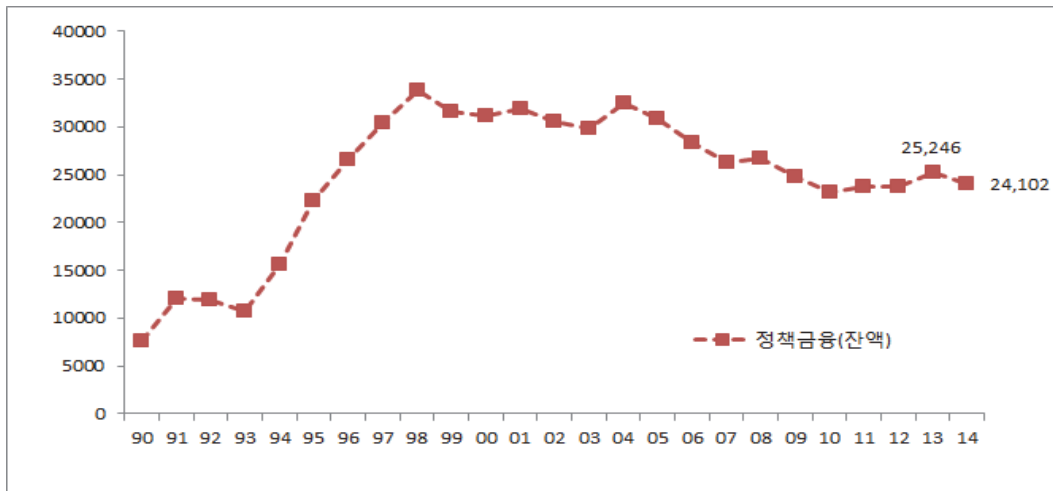
- 이러한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은 경제발전단계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해 왔음. 경제발전 초기에는 농가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1950~60년대), 정부의 재정여력이 개선되면서 농가지원의 주요 수단으로(1970~80년대), 시장개방화 시대에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의 수단(1990년대 이후)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였음(박성재, 2012).

□ 농업정책금융 규모 확대와 외연적 성장 정체

- 농업정책금융¹의 규모는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1992~2001년 사이에 총 22조 7,095억 원의 정책금융자금이 농업부문에 공급됨에 따라 정책금융의 규모가 크게 팽창하였음(이정환 외, 2009). 1992~98년의 42조 원 구조개선사업과 1994~2004년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생산기반투자 확대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책금융도 증가하였음. 특히 농어촌발전대책이 확정된 1994년 이후 자금 공급이 급격히 늘어났음.
- 농업금융에서 정책금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외연적 성장은 정체된 모습임. 부채대책을 제외한 농업정책자금의 연간 신규 공급규모는 2014년 기준 약 8조 원이고, 잔액기준으로는 2014년 기준 24조 1,020억 원임. 2001년, 2004년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부채가 장기저리 정책금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정책금융 잔액이 32조 4,96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정책금융의 규모 확대 추세는 멈추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¹ 농림축산식품분야(2013년 이후)와 농림수산식품분야(2013년 이전)을 포함하지만 편의상 농업정책금융이라고 하였음.

그림 1-1. 농업정책금융 지원규모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 농업금융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제도 검토 필요

-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를 포함한 대외환경 변화, 농업수익성 악화 및 농업 구조변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의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역할재정립 및 세부조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농업환경 변화 및 금융시장의 저금리기조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투자의 효과성, 투자 수요가 떨어지는 이유, 금리인하에 대한 쟁점으로 저금리 인데도 융자수요가 줄어드는 이유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금융의 종류에 초점을 두고 정책자금 수혜자인 농업인 등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지원자금의 대상·용도별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농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농업정책사업의 합리적인 지원조건을 검토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농업여건의 변화와 함께 저금리기조의 유지라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개선방안 도출하고자 함.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화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력 있는 농업인의 과도한 시설 건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농식품투자플랫폼 사업 검토

2. 연구내용

농업정책자금 운용현황

- 농업재정투융자 현황
- 정책금융 공급실태

농업금융 여건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 농업금융의 대내외 여건변화
- 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업정책금융 역할
- 정책금융 사례: 중소기업 정책금융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실태 조사

- 농업정책금융 융자조건 검토
- 농업정책금융 제도변화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 개선 과제 및 개선 방안

3. 선행연구

- 2000년대 들어서야 금융환경²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 1990년대 초반까지도 정책적인 관심도 적었기 때문에 농업금융에 관한 연구는 많지가 않았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부문 전망이 어두워지며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자 김용택 외(1993), 한두봉 외(1999)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음.
- 김용택 외(1993)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금융환경변화와 맞물려 대두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5가지 기본원칙 아래 은행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자율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지도금융의 강화, 단기자금원으로서의 특화, 대형화된 금융서비스센터로 확대 운영 등을 제시하였음. 특히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의지를 잘 반영하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담당할 공적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정책금고를 설치하자고 하였음. 이 연구결과는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논의 주제 가운데 핵심쟁점사항이 되었는데 농업정책금융의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기구설립의 추가적인 부담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였음(박성재 외, 2000).
- 한두봉 외(1999)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일반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실태를 분석하면서 농업금융에서 취해야 할 과제들을 적시하였음. 일반금융의 빠른 구조조정 속도에 비해 농업금융의 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² 이 때의 대표적인 금융환경변화는 금융자율화·금융혁신, 금융기관대형화 및 겸업화, 금융시장의 통합, 금융의 증권화, 위험관리 및 금융감독의 강화, 예금자보호제도 등이었음.

이후 예상되는 농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내용과 선진국 사례를 설명하고 농업금융의 과제를 도출하였음. 농업경영체, 금융기관, 금융정책으로 나누어 재무제표의 활용, 재무분석과 금융컨설팅의 활용, 농업금융기관의 경쟁력, 건전성 제고,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2차 농업금융시장의 도입, 재무제표의 표준화와 금융정보 수집, 농업금융 감독기관 설립, 농업지원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였음.

- 2000년대 들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농업금융 문제를 조망한 연구로서 박성재 외(2000)는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농업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금융체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즉, 금융산업 개혁 방향에 비추어 농업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금융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자인 상호금융과 중앙회 은행금융, 회원조합과 중앙회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발굴, 대안제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금융의 적정이자율, 적정상환기간, 정책금융 취급기관의 개방화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농신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밝혔음.
- 강종만 외(2004)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농업정책금융이 자금수요 초과시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취급금융기관 확대방안, 농업정책자금의 개방방안, 관리방법 개선방안, 적정수수료의 결정 및 이차보전방법의 개선방안,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 이정환 외(2009) 연구는 농업정책금융의 전달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금융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농업정책금융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전달 및 관리체계를 재원조달,

대출기관, 사업세분화,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책금융의 대출금리 문제와 신용보증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선진화 방안은 정책금융을 외적자본제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임. 설계주의적 농정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정책금융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대출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 박준기 외(2011)는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에서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하였으며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농업정책자금 현황과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농업정책금융의 목적과 영역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 신경분리에 대응한 지원체계 조정,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개별 자금의 농업종합자금화 등을 제안하였음.
- 김미복 외(2014)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에서 농업정책금융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농업여건의 변화,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규모, 종류, 금리, 전달체계, 부채, 신용보증 등 농업정책금융과 관련된 주요쟁점별로 현황과 과제를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제 2 장

농업분야 정책자금 운용 현황

1. 농업재정투융자 현황

1.1. 농림식품분야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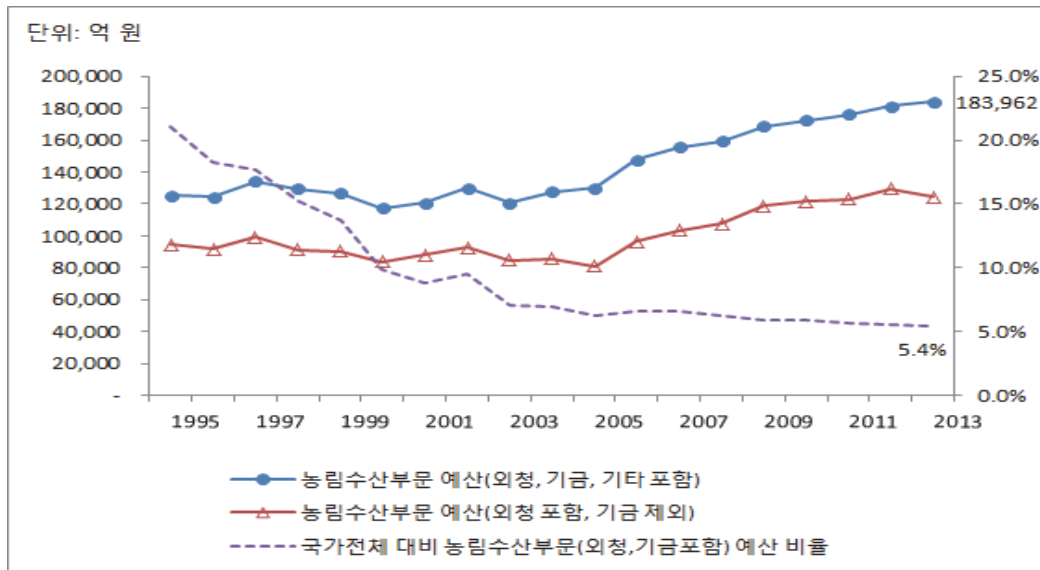
- 농림식품분야의 재정 규모는 예산 기준으로 외청³과 기금⁴ 포함 1995년 12.5조 원에서 2015년 19.3조 원으로 1.5배 가량 증가하였음.
- 규모로만 보면 국가전체 예산 대비 2015년 기준 약 5.0%로 1995년의 21.1%에서 16%p 정도 하락하였고 꾸준한 하락추세임.
 -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2015년 13.2조 원은 1995년 9.4조 원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총지출 대비 비율이 15.9%에서 3.5%로 하락하는 추세는 같음.
 - 외청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995년 11.2조 원에서 2015년 14조 원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지만 증가하였음.

³ 농진청, 산림청.

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기금, FTA이행기금,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재정투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임.
 -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여 '92~'02년간 총 82조 원(지방비 13조, 자부담 10조 원 포함)을 투입하였음. 이때의 투자 계획은 생산기반정비, 도매시장 등 유통개선, 시설현대화 등 농업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 이후 '04~'13년 10년 동안 총 119조 원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를 비전으로 투자하였음.

그림 2-1. 연도별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국가 예산 대비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2006~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1996~2013년

1.2. 보조와 용자

1.2.1. 농업보조금 현황⁵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용도나 교부조건 등을 붙여 교부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4.1%에서 2014년 14.8%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5년 13.1%로 감소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예산은 2011년 6조 7,358억 원(수산분야 포함) 2015년은 6조 5,441억 원으로 2013년 이후 해마다 상당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표 2-1. 최근 5년간 보조금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국가전체 예산(A)	국가전체 보조금		농식품부 보조금
		보조금(B)	보조금(A)	
2011	3,091,000	436,899	14.1	67,358
2012	3,254,000	464,724	14.3	68,313
2013	3,420,000	491,692	14.4	60,853
2014	3,558,000	525,392	14.8	62,255
2015	3,754,000	491,870	13.1	65,441

주: 2012년까지는 농식품부 보조금은 수산분야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digitalbrain.go.kr/>). 2015년

-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에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예정인 예산은 총 6조 4,642억 원 규모이고, 이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14조 2,883억 원)의 45.2%에 해당함.
-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6조 853억 원~6조 8,313억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에서 45.0%~4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⁵ 조윤희(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 연구보고서 참조

표 2-2. 농식품부 소관 2016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

	전체 예산	직접 사업	보조금		출연금 등	용자금
			지자체	민간		
예산	14,288,256	4,462,881	4,083,725	2,380,499	108,565	3,252,586
비중	100	31.2	45.2		0.8	22.8

자료: 조윤희(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재인용.

표 2-3.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안)
보조금	민간보조(A)	31,066 (45.5)	22,286 (36.6)	21,744 (35.0)	23,693 (36.2)	23,805 (36.8)
	경상보조	10,737	11,681	12,847	13,877	13,999
	자본보조	20,329	10,605	8,896	9,816	9,806
	지자체보조(B)	37,247 (54.5)	38,567 (63.4)	40,511 (65.0)	41,748 (63.8)	40,837 (63.2)
	경상보조	15,288	16,483	17,916	19,450	18,964
	자본보조	21,959	22,084	22,595	22,298	21,873
	보조금 합계(A+B)	68,313 (100.0)	60,853 (100.0)	62,255 (100.0)	65,441 (100)	64,642 (100)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C)	136,778	135,268	136,371	140,431	142,883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중 [(A+B)/C]		49.9	45.0	45.5	46.6	45.2

주: 2012년은 수산분야 포함.

자료: 조윤희(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재인용.

1.2.2. 농업보조사업 집행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에 6조 2,255억 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 중 5조 6,094억 원을 집행하여 약 90.1%의 집행률을 보임.
 - 민간보조는 경상보조 1조 2,847억 원과 자본보조 8,896억 원을 합한 2조 1,744억 원의 예산 중 1조 9,120억 원(89.0%)을 집행함.
 - 지방자치단체보조는 경상보조 1조 7,916억 원과 자본보조 2조 2,595억 원을 합한 4조 511억 원 중 3조 6,974억 원(91.3%)을 집행하였음.

표 2-4.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회계 및 기금	세부사업	2014		2015	2016
			예산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보조금 (A+B)		(2016년 예산안 기준)	6,225,488	5,609,385	6,544,108	6,464,215
민간보조 (A)			2,174,396	1,911,970	2,369,297	2,380,499
경상 보조	일반	수리시설유지관리 등 6개	170,061	169,957	173,839	176,610
	농특	친환경농업직불 등 48개	744,250	578,141	810,422	813,416
	광특	농산물유통개선	0	0	0	0
	양특	수입양곡대	423	423	423	400
	쌀 (소득)	사업관리비	2,106	2,106	2,002	0
	농안	농축산물판매촉진 등 13개	194,186	194,202	182,043	182,731
	농지	해외농업개발 등 7개	61,623	60,793	65,008	66,685
	축발	가축개량지원사업 등 12개	108,223	110,913	147,391	151,197
	FTA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등 7개	3,875	3,875	6,576	8,856
	소 계			1,284,747	1,120,410	1,387,704
자 본 보 조	농특	민간육종단지 등 9개	885,647	785,711	966,902	972,186
	축발	가축개량지원 등 4개	3,702	5,549	14,391	8,118
	FTA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등 7개	300	300	300	300
소 계			889,649	791,560	981,593	980,604
지자체보조(B)			4,051,092	3,697,415	4,174,811	4,083,716
경상 보조	일반	행정운영(국유재산관리경비)	300	300	300	0
	농특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등 27개	1,421,490	1,422,190	1,580,264	1,528,545
	지특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4,638	1,638	0	3,000
	양특	정부양곡관리비	1,162	1,104	1,162	1,162
	쌀	사업관리비	4,569	4,569	4,987	4,978
	농안	농산물마케팅지원 등 2개	1,600	1,515	3,690	2,280
	농지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개	4,399	4,395	4,399	4,399
	축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9개	149,483	147,373	146,243	147,545
	FTA	피해보전직불 등 4개	203,978	175,669	203,978	204,503
	소 계			1,791,619	1,758,753	1,945,023
자 본 보 조	농특	배수개선사업 등 20개	550,168	352,247	511,691	510,600
	광특	일반농어촌개발 등 15개	1,330,789	1,244,863	1,383,222	1,384,418
	에특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61,786	48,607	51,405	35,984
	농안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등 2개	61,033	59,248	43,907	27,889
	축발	축산분뇨처리지원 등 5개	77,168	63,686	71,884	72,012
	FTA	원예시설현대화 등 5개	178,529	170,011	167,679	156,401
소 계			2,259,473	1,938,662	2,229,788	2,187,304

1.3. 용자

- 농업부문 재정사업의 효율성 강화는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음. 예산 기본방향에 명시하고 사업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0년대 들어서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의 제도 개선”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는 “효율적(전략적) 자원배분”을 강조하였음.
 - 또한 2010년 이후 “보조금 개편,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이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음.

- 하지만 농업 분야는 이차보전 방식보다 재정 및 기금을 바탕으로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데, 직접융자 방식을 이용해 왔음. 전체 융자액은 2016년 예산기준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8%에 해당함<그림 2-2>.
 - 2000년대 융자액의 하락추세는 그리 크지 않지만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비중의 하락 추세는 더욱 가파른 것임.

- 정책금융 지원방식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고 개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가를 통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금융기관이나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하방식(금융기관 융자)이나 직접융자방식이 정부의 정책목표를 더욱 잘 달성할 수 있음(박상원, 2009)⁶.
 - 현재의 직접융자와 대하방식은 수혜자에게 융자되는 모든 자금을 정부가 직접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은 크지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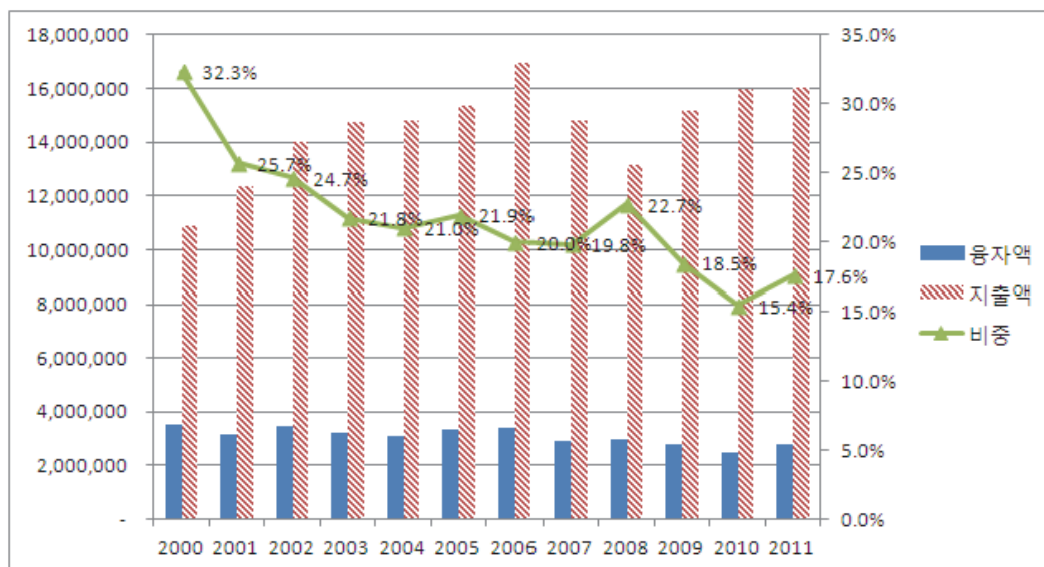
⁶ 대하방식은 금융기관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은 특정 지원 대상자들에게 정해진 조건에 따라 융자하는 방식임.

번 큰 자금이 마련되면 이후에는, 지난 기의 원금상환으로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작음.

- 반면에 이차보전방식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므로, 동태적으로 본다면 총소요자금은 방식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자금의 관리·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그림 2-2. 농림수산물 분야 융자액 비중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재무부, <결산개요(통계편)>,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1980~1993.
 재정경제원, <결산개요(통계편)>,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1994~1996.
 재정경제부, <결산개요(통계편)>,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1997~2006.
 기획재정부, <결산개요(통계편)>,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괄, 2007~2009.

표 2-5. 농림수산물 분야 자원별 용자 현황

단위: 백만 원

		2000	2003	2005	2009	2011	2012
농특회 계	구조개선계정	1,029,113	434,374	346,253	55,169	59,200	127,221
	농특세계정	210,686	93,353	23,460	18,000	12,687	24,458
재특회계		98,960	270,240	318,740	0	0	0
에특회계		0	0	0	0	15,870	32,462
농안기금		1,573,886	1,693,812	1,381,519	1,341,339	1,348,654	1,466,501
농지기금		243,722	312,060	395,937	442,230	590,793	627,360
수산기금		0	56,128	470,093	481,805	403,042	516,988
FTA기금		0	0	52,596	144,545	169,768	227,629
축발기금		361,819	346,322	375,629	323,275	220,281	267,495
합계		3,518,186	3,206,289	3,364,227	2,806,364	2,820,295	3,290,115

자료: 농림수산물부. 각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2000년, 2003년, 2005년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2. 농업정책금융 공급실태

2.1. 농업정책금융 규모

- 농업정책금융의 총잔액은 2014년 기준 34조 2,48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음.
 - 농업정책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규모는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약 8조 원이고, 잔액기준으로는 2013년 기준 24조 1,020억 원임.
 - 농신보의 보증규모는 2014년 잔액기준 10조 1,471억 원이고 2014년 신규보증액은 4조 7,181억 원(16만 건)으로 전체 정책금융의 약 29.6%를 차지함.
-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에서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0% 가까이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였음. 2010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음.

표 2-6. 농업정책금융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2001	2005	2011	2012	2013	2014
대출	319,088	308,615	236,946	237,169	252,464	241,020
보증 (비중)	186,066 (36.8)	178,088 (36.6)	85,615 (26.5)	86,895 (26.8)	94,275 (27.2)	101,471 (29.6)
계	505,154	486,703	322,561	324,064	346,739	342,4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신보.

- 한편 우리나라 전체 정책금융의 총잔액은 2012년 기준 71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2001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음.
 - 대출규모는 395.3조 원, 보증규모는 276.9조 원으로 비중은 38.5%임.
 - 1980년대 금융자유화 이후 정책금융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보증과 보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경기하락으로 대출 비중이 늘었음.
- 일반 정책금융은 보증보험의 상승에 따라 정책금융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은 대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융규모가 정체되었음.

표 2-7. 국가 전체 정책금융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출	2,636,592	2,990,780	3,282,424	3,707,842	3,953,304
투자	642,000	463,220	430,327	493,327	470,482
보증 보험	2,134,242	2,481,827	2,540,385	2,612,628	2,769,257
계	5,412,834	5,935,827	6,253,136	6,813,797	7,193,043

자료: 손상호(2013).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재인용(p.23)

-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비교하여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은 보증, 보험,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원이 부족한 편이나 여전히 농가입장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는 높음.

- 대농, 중소규모의 전업농, 겸업농, 고령영세농 등 농가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 정책금융 방식의 유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농가의 차입금 총액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가경제조사를 이용, 추정하였음.⁷
 - 농가경제조사에 의해 추산된 농가 총 차입금(25조 원)과 정책금융잔액(23조 원, 비농가에 공급된 것도 포함)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차입금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0%가량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98%대로 감소하였음.
 -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고 지난 5년간 정체되어 있음.
 - 2000년대 이전에는 자금 공급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농가의 차입금 분포의 양극화가 심했던 것으로 예상됨.
- 개별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2012년 기준 2,726만 원 정도로 이중 금융기관 차입은 평균 2,172만 원임.

2.1.1. 직접대출

- 농업정책자금의 신규공급은 2001년 10.6조 원에서 2007년 7.2조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현재 8조 원 수준임.
 - 부채대책을 제외하면 9.8조 원(2001년)에서 5.8조 원(2005년)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신규 부채대책이 거의 없어 2014년 5.6조 원 정도로 정체
- 정책자금 중 2014년 말 기준 정부자금의 비중은 44.0%이고 정부가 이차를

⁷ 농가부채총액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총 차입금은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차입금에 당해 연도 농가호수를 곱하여 추정하였음.

보조한 민간자금 대출 잔액은 55%를 상회함.

- 정부자금 중 농특회계, 재특회계 자금을 포함하는 특별회계 재원의 비중은 9.7%에 불과하고, 기금(농안, 농지, 축발, FTA)의 비중이 늘어 38.2%를 차지함. 특히 농안·농지기금의 용자 사업이 높음.
- 민간자금 중 부채대책 비중은 15%에 불과함. 대부분 농협의 자금이며 (96.9%), 산림조합, 시중은행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 전체 용자 잔액을 구성하는 재원 현황의 추이를 살펴봐도 2000년대 들어 특별회계의 비중은 점차 낮아졌고 기금의 비중이 높아졌음.
 - 재원이 특별회계인 자금은 2001년 9.9조 원에서 2013년 2.4조 원으로 감소하여서 31%에서 9.7%로 비중이 낮아짐.
 - 기금자금은 2001년 6.5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증가, 비중 역시 20.6%에서 38.2%로 증가

표 2-8.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14년말 대출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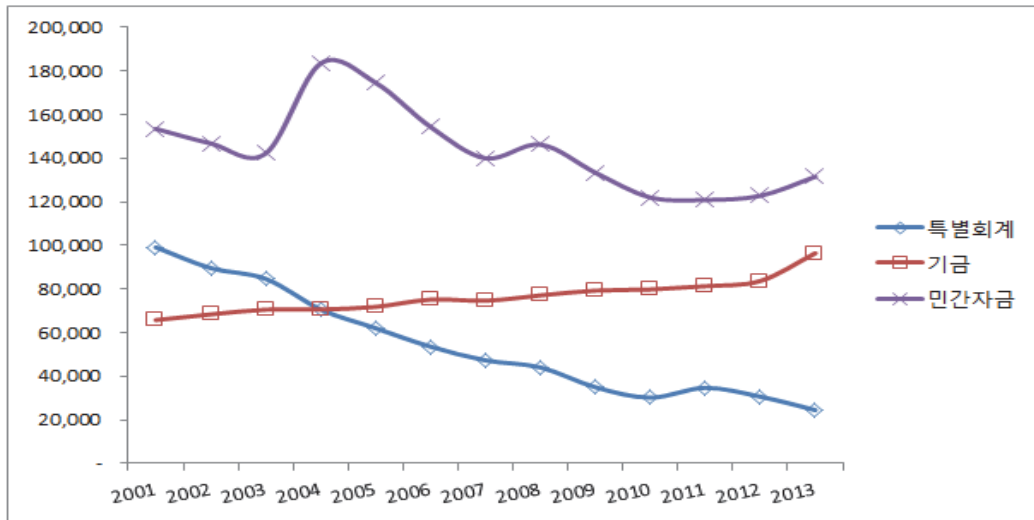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재원	취급기관	계	농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시중은행
	정부자금	농특회계	10,750	8,178	2,572		
에특회계		187	187				
재특회계		4,277	4,277				
소계(a)		15,214	12,643	2,572			
농안기금		26,770	19,180		7,591		
농지기금		41,501	0.4			41,501	
축발기금		15,588	14,257				1,331
FTA기금		7,065	5,060		2	2,003	
소계(b)		90,924	38,497		7,593	43,503	1,331
계(A=a+b)		106,138	51,140	2,572	7,593	43,503	1,331
차관자금(B)		11	11				
민간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120,620	116,761	2,940			919
	부채대책	14,251	14,006	245			
	계(C)	134,871	130,767	3,185			919
합계(A+B+C)		241,020	181,918	5,757	7,593	43,503	2,24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그림 2-3. 농업정책자금 재원별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2.1.2. 이차보전

- 이차보전사업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농업자금('14년 예산 기준으로 정책자금 19개 사업, 부채대책자금 6개 사업)을 저리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임.
 - 기준금리: 금융기관의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 금리
 - 지원근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표 2-9. 이차보전 사업내용

사업기간	'12년까지 투자액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70년~계속	101,097억 원	이차보전 기준금리와 농업자금 대출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차차액을 지원	정액보조	농업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

- 2014년 기준 3,213억 원 예산사업임. 과거 부채대책의 비중이 높았던 2005년, 2008년에는 8,386억 원, 5,552억 원이었고 최근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특히 저금리 기조로 기준금리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2009년, 2010년에는 불용액이 2,218억 원, 1,717억 원 발생하기도 하였음.
 - * 2,825억 원('15년)

- 전체이차보전 자금 중에서 부채대책을 제외한 정책자금 이차보전 비중은 2005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1년 39.1%에서 2004년 부채대책이 반영⁸된 2005년 19.4%까지 하락했지만,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예산 기준 83.3% 비중을 차지함.
 - 재정운용효율화를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을 늘리는 추세임.

- 이차보전 기준금리 추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NH농협은행 자금 기준으로 2003년 8.4%에서 2014년 4.9%로 하락하고 있음.
 -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차보전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있음.
 - * 4.11%('15년)

- 현행 변동이차보전방식 하에서 농업정책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차보전 예산 편성·집행 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정이차보전방식(변동금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2015년 일부 사업이 변동금리 방식을 도입하였음.
 - 고정이차보전방식은 이차율을 고정금리로 채택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방식임. 현재 적용 중인 대출금리를 고정하고 이차율(기준금리-대출금리)이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 현행 변동방식 하에서는 시장여건에 상관없이 대출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상승 또는 하락)시 정상적 시장기능을 통한 농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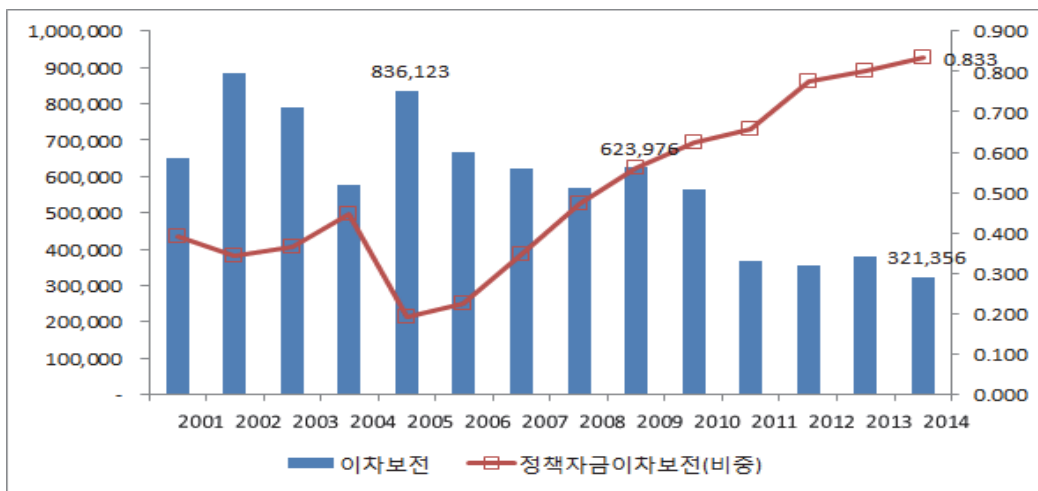
⁸ 기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4→1.5%) 및 상환연기(5년거치 15년상환) 등 '04부채대책 소요 반영

책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이차보전 예산 편성에도 정확한 소요액 추산이 어려워 매해 불용·이월액의 발생이 불가피함.

그림 2-4.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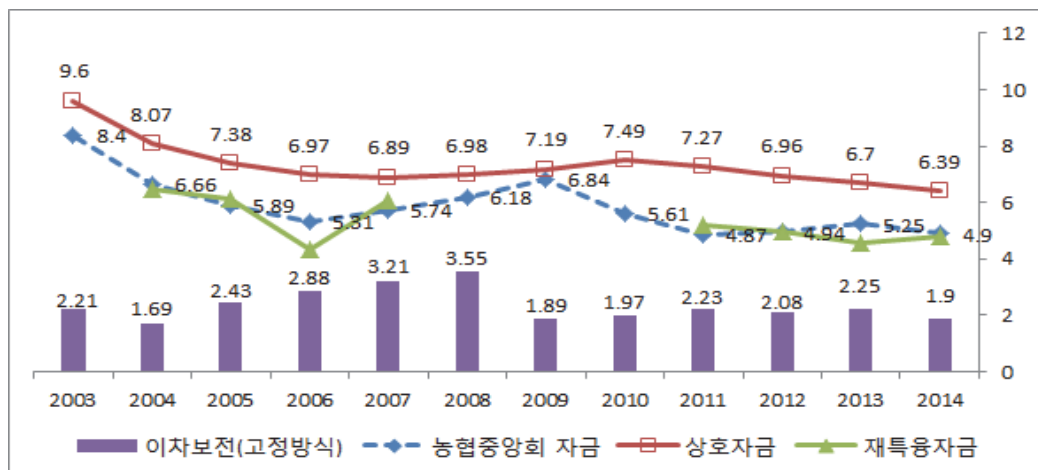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내역」

그림 2-5.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기준금리

단위: %



주: 2013~2014년은 농협중앙회자금기준금리를 농협기준금리로 사용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내역」

NH농협은행

표 2-10. 농업부문 이차보전 사업내역 및 예산추이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4예산	2013예산	2012예산	2008예산	2005예산
정책 자금 이차 보전	농축산경영자금	24,360	25,047	39,346	94,673	87,587
	재해농가이자감면	5,428	12,257	9,693	1,405	10,405
	농기계구입				12,290	5,167
	농기계사후관리				767	66
	재해복구융자금	3,285	4,718	4,904	15,390	1,883
	RPC운영자금	50,141	47,010	48,500	44,708	34,425
	농업종합자금	106,865	137,143	102,896	85,447	22,684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 가지원자금	5,548	7,832	5,485	5,854	1,386
	농촌주택개량자금	19,252	22,958	9,250	2,131	98
	협동조합합병자금	1,692	3,009	7,175	4,545	398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5,022	4,628	2,175	2,880	566
	귀농귀촌정책지원자금	3,868	3,370	1,136		
	사료구매자금	16,524	5,500	14,323		
	긴급경영안정자금	9,483	6,890	23,110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4,193	7,983	3,766		
	축사시설현대화자금	7,601	13,547	4,193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자금	2,535	1,488			
	축산경영종합자금	998				
	소비자유통활성화	308				
	인삼약용작물계열화	355				
6차산업창업자금지원	285					
부채 대책 자금 이차 보전	정책자금상환연기	29,939	37,211	39,703	72,557	103,766
	상호금융대체자금	1,313	6,377	10,234	121,674	400,604
	농업경영개선자금	0	9	229	23,027	46,337
	연대보증해소자금	1,133	1,613	1,899	8,350	10,724
	농업경영회생자금	3,430	5,525	5,192	10,461	5,763
	정책자금대체자금	16,908	22,688	21,869	40,276	71,715
부채상환인센티브	890	1,486	1,477	8,809	20,663	
농협 구조 개선	조합부실정리자금조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 금채권 발행이자 지원					14,400
	합계	321,356	378,289	356,555	555,244	838,637

표 2-11. 2014년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용자조건

사업명		재원/용도	금리	
이 차 보 전	농축산경영자금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기관자금	3%	
	농업 종합 자금 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3%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대출취급기관여신금리) - (지원금액별정부이자보전이율3.8~2.3%) - 운영자금은금리고정/변동선택가능
		관광농원/농촌민박	관광농원/농촌민박	3%(운영자금은금리고정/변동방식선택가능)
		농기계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3%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4%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은 금리 고정/변동 선택가능
		꿀·녹용가공산업 육성	꿀·녹용가공산업 육성	3%(농업경영체가 금리 고정/변동 선택가능)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3%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3%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금융기관 자금	0~2%(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자금	3%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협은행, 상호금융자금	3%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2000년대 초반 6개 자금에서 2014년 기준 19개 자금에 대해서 사업이 수행되었음.
- 2000년대 초반: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농가이자감면, 농기계구입, 재해복구용자금, RPC운영자금, 농업종합자금
 - 2006년 이후: 농기계사후관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 협동조합합병자금 포함
 - 2010년 이후: 귀농귀촌정책지원, 사료구매, 긴급경영안정, 도축가공업체 지원 자금이 융자에서 전환

- 상호금융 자금 등을 활용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자금을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고, 동시에 이차보전방식 및 수준 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호금융 수신고는 2013년 말잔 기준으로 252조 원임.
 - 저금리 시대에 사업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을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이차율을 고정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으로써(변동금리방식) 대출금리를 시장여건에 맞게 변동케 하고 예산 집행 시 불용·이월액의 발생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집행율은 2009년 60.4%, 2010년 68.2%, 2012년 65.1%

2.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신용보증 현황

□ 농신보 현황

- 농신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은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어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하였음.
- 농신보는 2015년 말까지 특례보증을 포함하여 110조 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연대보증부담 해소 및 정부의 부채경감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 농신보 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농림수산단체 등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나 주로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2015년 12월까지 총 10조 3,584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정부는 농신보법에 의거해 현재 약 46.5%를 출연하였음. 정부출연금의 최대는 2009년으로 약 9,095억 원

표 2-12.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5년.12월	누 계	구성비
출연금	정부	54,196	-	-	△5,000	△1,000	48,196	46.5
	금융기관	11,413	1,913	2,010	2,129	1,237	18,702	18.1
	소계	65,609	1,913	2,010	△2,871	237	66,898	64.6
보증료		6,691	368	371	403	450	8,283	8.0
기타		20,054	3,340	2,216	1,690	1,104	28,404	27.4
계		92,354	5,621	4,597	△778	1,791	103,584	100.0

주: 기 타=수입이자+수입손해금+영업외손익 등.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고자료.

- 농신보의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정부출연에 의한 세출예산은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 등으로 업무별 담당기관이 구분
- 농신보의 관리기관은 중앙본부와 9개 지역보증센터 및 18개의 권역보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및 신용보증금액 등에 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직원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총원 381명이며, 지역 및 권역 보증센터는 7억 원 이하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이하의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본부는 7억 원 초과인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초과인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구상권 관리업무는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음.
- 농신보의 보증 규모는 설립 이후 총 110조 8,59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12월말 보증잔액은 약 11조 122억 원 수준임.
 - 신규 보증액은 5조 3,731억 원임.

표 2-13. 농신보 보증 규모(2014년 말 기준)

단위: 건,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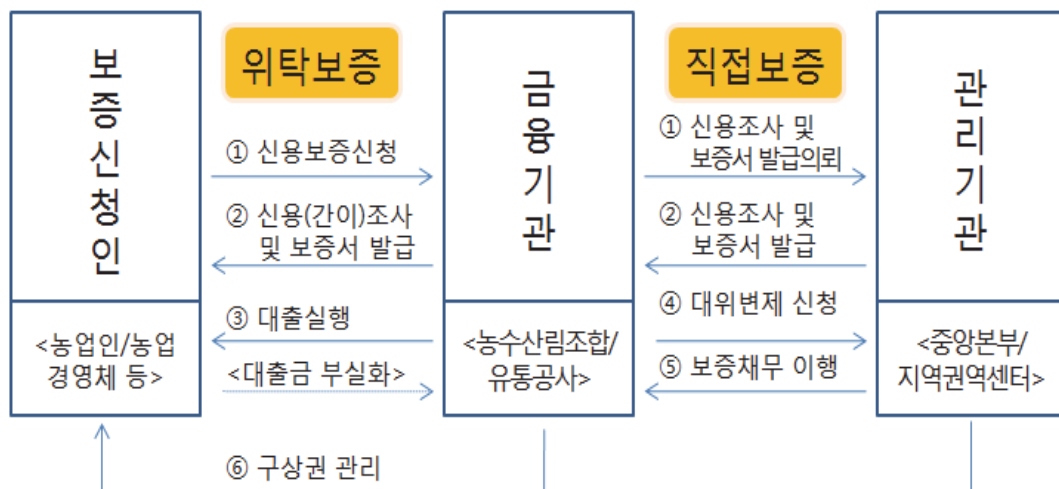
구 분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5년.12월	
신규보증	순 신규	건수	50,215	54,575	67,430	54,948	56,379
		금액	14,810	16,608	23,907	26,158	30,118
	갱신보증 (대환, 연장)	건수	112,346	116,915	107,624	104,720	98,504
		금액	16,750	18,796	19,118	21,024	23,613
	계	건수	162,561	171,490	175,054	159,668	154,883
		금액	31,600	35,404	43,025	47,182	53,731
보증잔액	건수	608,889	587,616	575,845	515,161	500,379	
	금액	85,615	86,895	94,275	101,471	110,12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고자료.

□ 신용보증업무 현황

- 농신보의 보증업무 처리절차는 농업인 등이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농신보 관리기관에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농신보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그림 2-6. 농신보 보증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신보는 대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일부 자금에 대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2011.4.27. 일부 개정) 기금부실화에 따라 농신보 부분보증비율을 낮추었다가 일부 상향 조정하였음. 2003년에 비농업인의 정책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2004년에 농업인의 정책자금 중 직접보증분에 대하여 부분보증제도가 시행되었음.
- 2005년부터는 농업인의 정책자금 중 위탁보증분에 대한 부분보증제도를 시행되었는데 부분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면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손실의 15%를 부담하고, 농신보는 85%를 보상하고 있음. 그 외는 2:8 비율임.
 -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농신보의 부분보증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즉, 잔액 기준으로 농업인의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자금, 재해대책자금, 부채대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제외), 대환자금 및 기한연장자금에 대해서는 부분보증이 적용되지 않음.

표 2-14. 부분 보증 운용 현황

구 분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이용자 (금융기관)
농어업인	85	15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85	15
그 외 보증대상자	80	2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 농신보의 연도별 총 보증한도액은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 기금의 20배로 제한됨. 1인당 보증한도는 보증대상자에 따라 10억 원~50억 원
 - 연도별 법정 운용배수 : ('72 최초) 10배 → ('76년) 15 → ('95년) 17 → ('01년~현재) 20
 - 개인은 10억 원, 법인은 15억 원, 관리기관이 별도로 인정한 대상자는 50억 원(RPC, FTA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임.

<보증한도>

- 개인 및 단체 10억 원, 법인 15억 원
- 보증한도예외 적용
 - ① 민간 RPC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 50억 원(개인30, 법인50)
 - ② APC 시설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원료매취자금 : 30억 원
 - ③ INNO-BIZ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 30억 원
 - ④ 수출 및 규모화사업 대상자 : 30억 원(부분보증 80:20 적용)
 -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중 이차보전방식 사업대상자 : 50억 원이내(개인 30, 법인 50)
 - ⑥ 대형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대상자 : 50억 원
 -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등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는 0.2%p~0.1%p 차감
 - 기 보증잔액을 포함한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신용조사 방법을 차등 적용

표 2-15. 기준 보증료율

구분	보증금액	농림어업(1차산업)	비농림어업(2,3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	1억 원 이하	0.3%	0.4%
	1억 원 초과	0.4%	0.6%
	5억 원 초과	0.6%	0.9%
법인	1억 원 이하	0.5%	0.8%
	1억 원 초과	0.7%	1.0%
	5억 원 초과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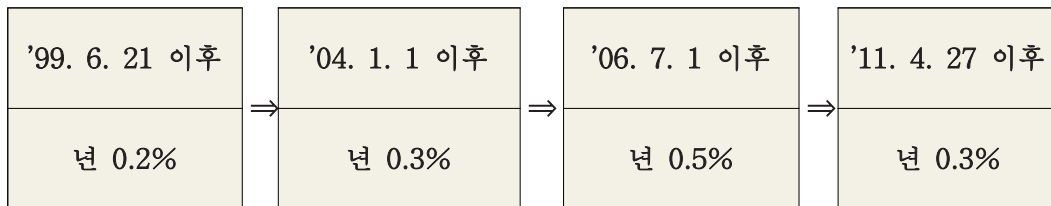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16.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50백만 원이하	300백만 원이하	300백만 원초과
10개 필수 확인사항 점검 (대상자, 대상자금 등)		
신용평가	신용평가 운전(시설)사업성평가	신용평가 운전(시설)사업성평가 재무·비재무평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그림 2-7. 보증료율 변동 내역 (개인, 1억 원 이하 기준)



○ 보증금액 1억 원 이하의 구성비는 81.9%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 10억 원 초과는 1.4%를 차지함.

- 2013년 기준 건당 평균 보증금액은 16백만 원

* 총보증건수 575,845건, 보증잔액 94,275억 원

표 2-17. 금액별 보증잔액(건당)

단위: 억 원

	3천만 원 이하	3~5천만 원	5천~1억 원	1~5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초과	합계
보증 잔액	43,766 (46.4%)	19,030 (20.2)	14,405 (15.3)	13,250 (14.0)	2,536 (2.7)	1,288 (1.4)	94,275

□ 대위변제⁹와 구상채권¹⁰

- 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다가, '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농신보가 2015년까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2,971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2-18.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5년.12월	누 계	구 성 비
일 반 보 증	29,057	469	613	712	1,082	31,933	43.8
우 대 보 증	5,659	199	232	181	187	6,458	8.9
특 례 보 증	32,799	587	509	410	275	34,580	47.4
계	67,515	1,255	1,354	1,303	1,544	72,971	100.0

- 농신보는 대위변제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음.
 - 현재까지 구상채권의 회수액은 1조 7,461억 원이고 이는 대위변제 누계액의 15%수준임. 회수율은 23.9%임.

9 채무자가 갚지않아 금융 기관에 대신 변제한 금액

10 농신보 대출로 지원한 채권 중 부실이 발생해 채무자로부터 회수가 어려운 채권

표 2-19. 구상채권 회수율

단위: 억 원, %

구분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5년.12월
구상·특수채권	잔액		55,281	55,501	55,914	56,331	56,969
	회 수	연 도 중	1,366	1,121	1,016	967	991
		누 계(A)	13,366	14,487	15,503	16,470	17,461
대위변제 누계액(B)			67,515	68,770	70,124	71,427	72,971
회 수 율(A/B)			19.8	21.1	22.1	23.1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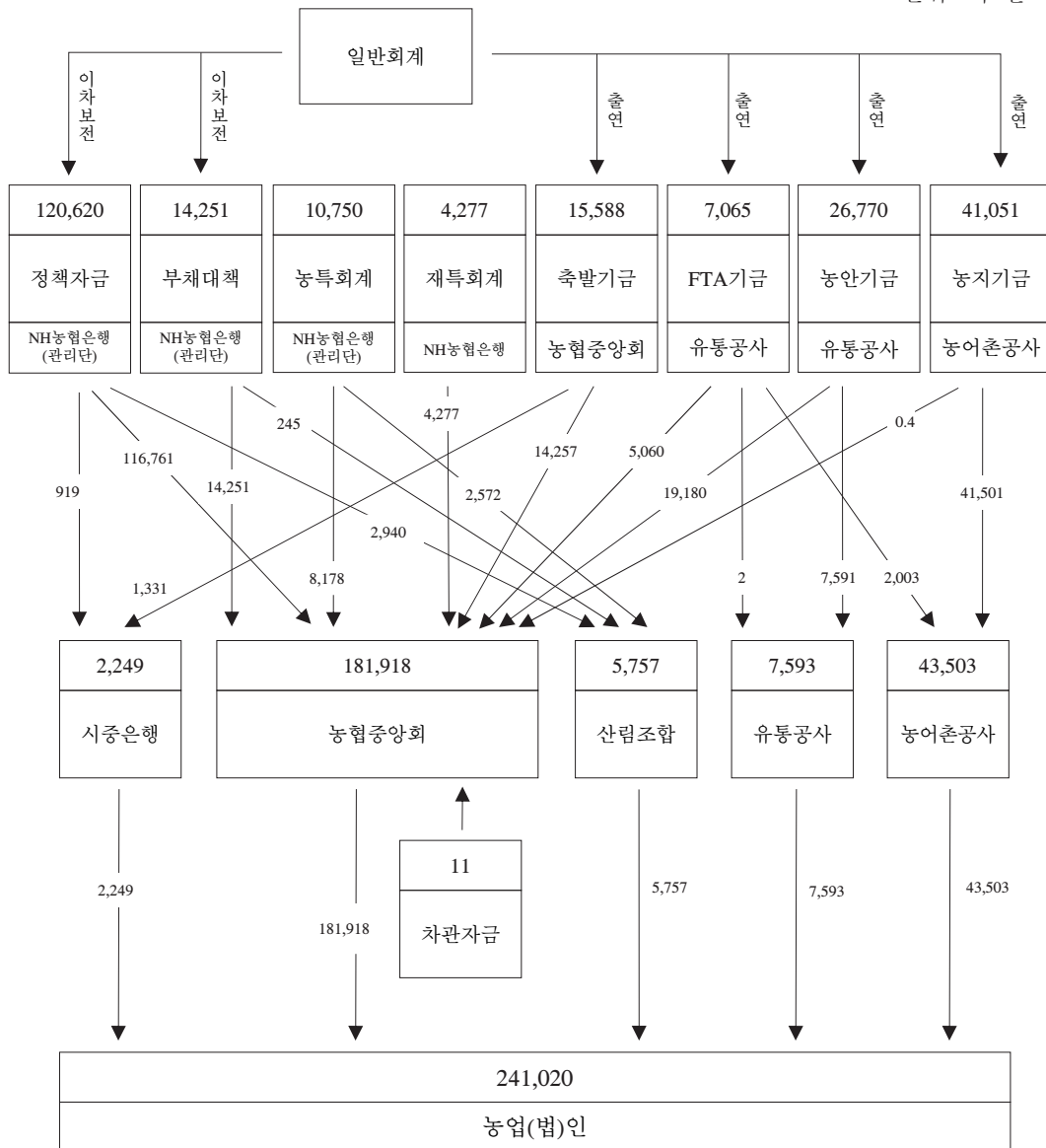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 정책자금 전달체계

- 현재 농업정책금융은 재원별로 관리 및 관련 금융사업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금융의 가장 큰 목적인 기본 정책사업의 유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농특회계와 이차보전자금 관리 및 대출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은행, 농안기금은 유통공사, 농지기금, FTA기금은 농어촌공사, 공자기금 및 축발기금은 농협은행 및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음<그림 2-8>.
- 재원별로 대출 및 관리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금융 기능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이 기금별로 구분된 정책금융의 공급채널은 정책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중복기능과 상호 경쟁 및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그림 2-8. 현재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14년 말 잔액 기준)

단위: 억 원



자료: 이정환 외(2010). 「농업정책금융 선진화방안」수정인용.

2.2.1. 기금 전달체계

- 현재 각종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 성격과 부합되는 농식품 분야 보조용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위험을 부담한 주체가기 보다는 재원을 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 개별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특히 개별 기금의 중앙부처 관리기관도 달라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표 2-20. 기금사업 종류

구분	사업명
FTA 기금	직접피해지원,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과수 및 원예경쟁력제고, 종자경쟁력제고, 축산업경쟁력제고, 축사시설현대화
농안기금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정, 산지유통활성화, 농산물유통개선, 소비자유통활성화, 종자수급조절, 식품산업 육성, 농산물 수출촉진
농지기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해외농업개발, 새만금종합개발, 대단위농업개발, 간척농지활용지원, 농지종합정보화, 농업진흥지역관리
축발기금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경쟁력제고, 친환경축산지원, 축산물위생안전성, 가축방역

자료: 축산발전기금. <http://www.ldf.or.kr/>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http://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http://www.ekr.or.kr/>.

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¹¹

FTA 기금 설치 목적 및 근거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 경영 및 생활

¹¹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자료 참조

안정에 기여

- 2004년 3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재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기금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 6월 농특회계에서 전입된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운용 개시

□ FTA기금의 재원 및 용도

- 기금은 FTA 특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출연금, 차입금, 수익금 등의 재원이 조성되며, 해당 기금은 FTA 특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경영안정, 폐업지원 등 기금 설치의 목적에 준하여 운용

표 2-21. FTA 기금 재원 및 용도

구분	내용
기금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정부, 정부외의 자, 마사회특별적립금 - 차입금: 한국은행, 다른 기금 및 회계 - 수입이익금: 관세할당물량(TRQ) 수입자 부담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기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 -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폐업지원 -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가공업 지원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FTA기금 관리기관

- FTA기금관리기관 관리주체는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기금운용계획, 지출한도배정, 수탁기관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탁관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금관리부에서 실시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운용 및 기금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

표 2-22. FTA 기금 관리기관

구분	기관명	주요기능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지출한도배정, 수탁기관 지도 감독 등
수탁관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운용 및 기금결산 등

□ 대출취급기관

- FTA기금의 대출취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처 농지사업팀 과원영농 규모화 지원사업의 기금대출을 취급하고, 그 외 사업의 기금대출은 농협이 담당하고 있음.

표 2-23. FTA 기금 대출취급기관

구분	기관명	부서
과원영농 규모화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사업팀
그 외 사업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¹²(농안기금)

□ 설치목적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유통개선 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설치

□ 농안기금의 재원 및 용도

- 기금은 정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용자대출과 지출사업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¹²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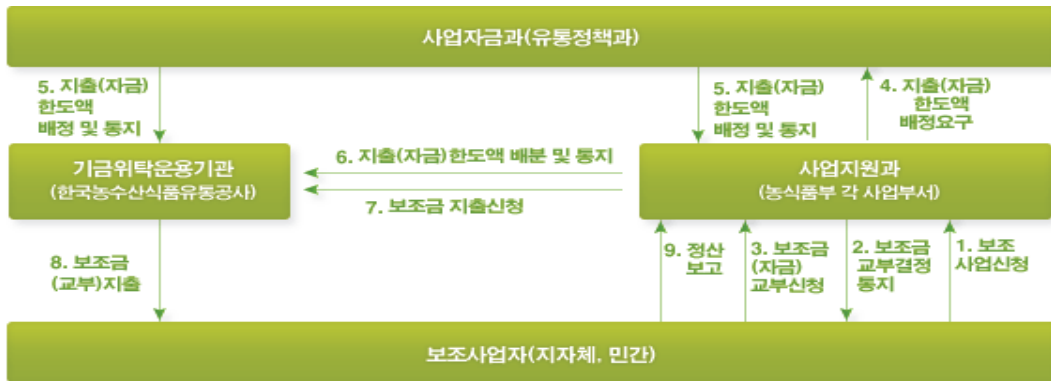
표 2-24.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재원 및 용도

구분	재원 및 용도
기금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출연금 - 기금운용수익금 -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납입되는 금액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 용도	<p>용자 및 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 농산물의 수출촉진 -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 도매시장·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 정산, 운영 및 시설 설치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지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및 법 제12조(유통명령의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 법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법 제 9조의 2(물수 농산물 등의 이관), 법 제13조(비축사업 등)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 생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보조사업 체계

-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가 농식품부의 각 사업지원과에 보조 신청하면 사업지원과는 교부 결정을 확정하고 사업자금과인 유통정책과와 지출한도액 배정을 논의
- 기금위탁운용기관인 aT는 유통정책과와 사업지원과에게 지출한도액 배분통지를 받고 이를 보조사업자에 지출
- 사업완료 후 보조받은 사업자는 사업지원과에 정산 납부

그림 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보조사업 지원 체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 용자사업 체계

- 용자사업도 보조사업과 관리기관 및 지원체계가 비슷하지만 사업주관기관인 대출취급기관(aT, 농협)이 포함
- 지원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인 aT와 농협 등에 대출가능 금액을 파악한 후 대출취급기관이 각 사업지원과에 용자한도액을 파악하고, 사업지원과에서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을 요구
- 사업자금과는 기금위탁운영기관과 사업지원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및 통지. 사업지원과는 이를 대출취급기관에 다시 배분 및 통지를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기금위탁운영기관에 대여신청을 통해 자금을 대여받고 대출신청을 한 지원대상자에 대출을 실행

그림 2-1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사업 지원체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 농안기금관리 및 사업담당기관

- 기금관리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로 기금운용계획, 지출한도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임관리는 국립중자원, 위탁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담당

표 2-2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리 및 사업 담당

구분	기관명	주요기능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지출한도배정, 수입·수탁기관 감독
위임관리	국립중자원	중자수급관리사업과 관련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위탁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중자수급관리사업을 제외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운용, 결산 등

다. 농지관리 기금¹³(농지기금)

□ 설치목적 및 근거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지화, 농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치

□ 용자 및 투자사업 지원 절차

- 사업 대부분은 사업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 간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대상자와 농가 및 농업법인의 매도, 매입, 임대 등의 업무 수행
- 용자금 지원절차
 - 용자금은 기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여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농지거래약정 및 상환약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 용자금에 대한 용자원리금과 함께 농지임대료를 상환하는 절차

그림 2-11. 용자금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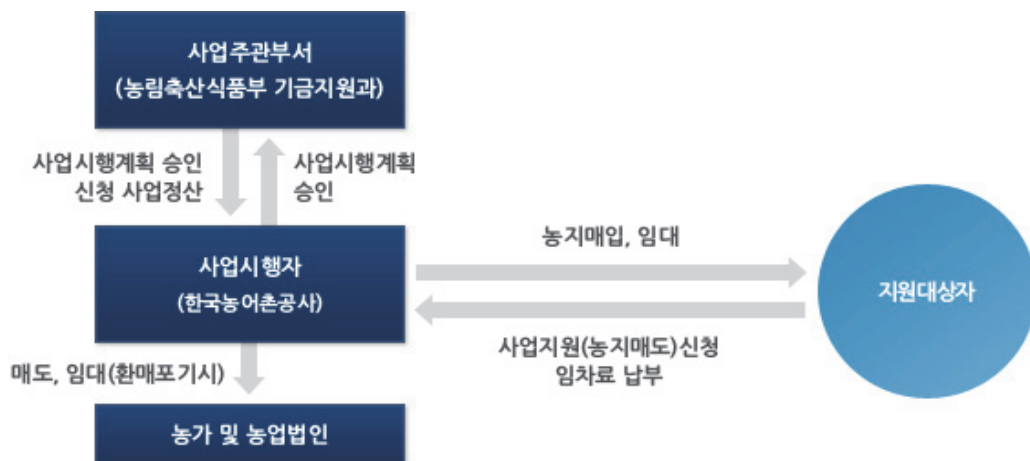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¹³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http://www.ekr.or.kr/)) 자료 참조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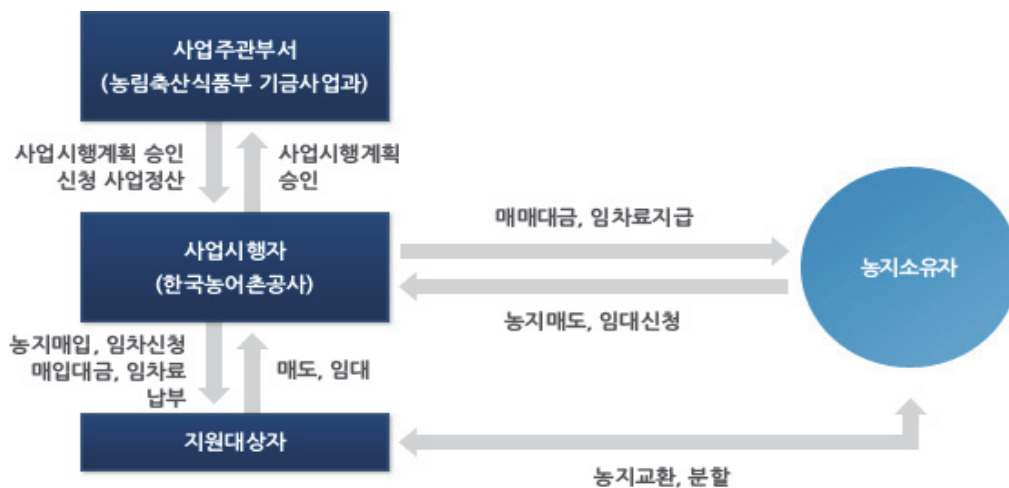
그림 2-12.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농지규모화 사업

그림 2-13.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 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농지매입비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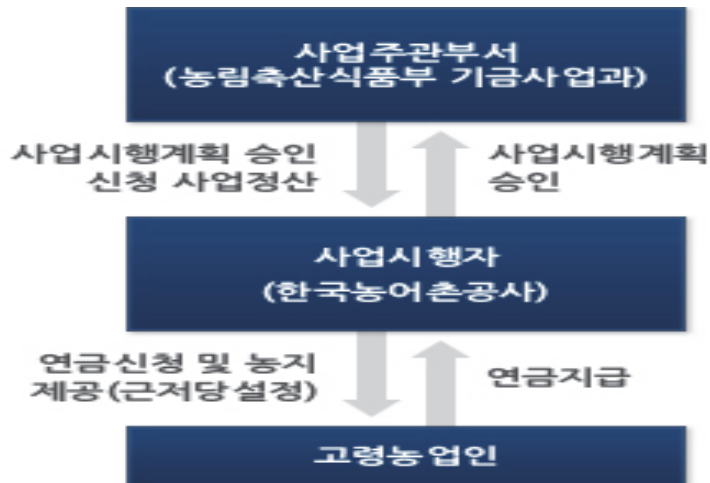
그림 2-14. 농지매입비촉사업 지원 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농지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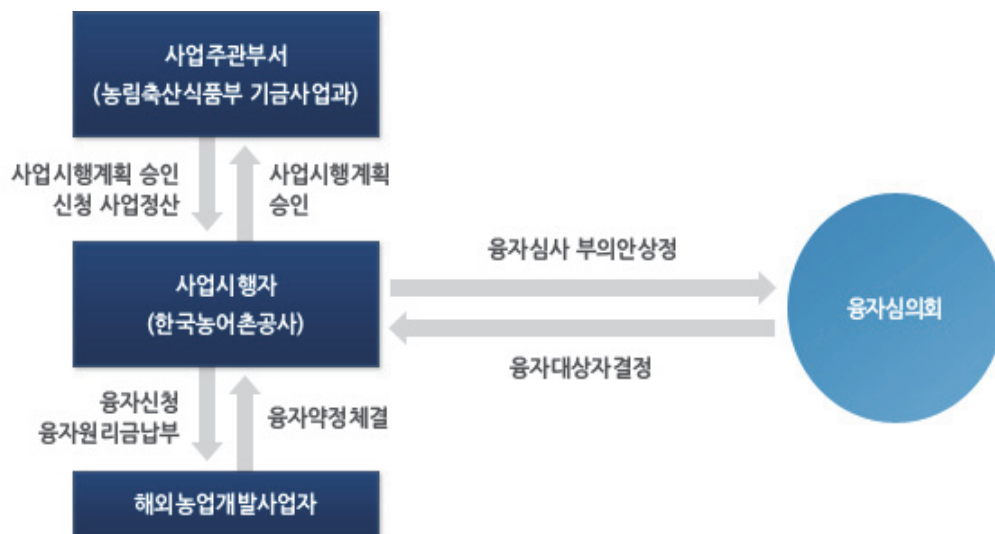
그림 2-15. 농지연금 사업 지원 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해외농업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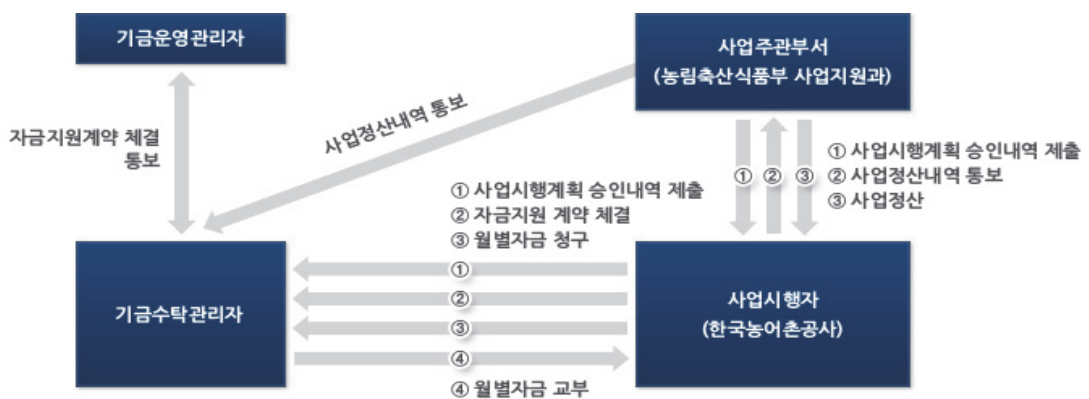
그림 2-16.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그림 2-1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원 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농지기금의 재원 및 용도

- 기금의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이 있으며, 기금은 각 관련법에 의거하여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등 사업에 필요자금으로 운용

표 2-26. 농지관리 기금 재원 및 용도

구분	재원 및 용도
기금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출연금 - 법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기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장려금의 지급 -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용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용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용자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용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의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농지기금운용·관리기관

- 농지관리기금의 기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과에서 담당하며, 수탁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임.
- 각 사업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과, 국제협력총괄과, 간척지농업과,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금관리처, 농지은행처, 국제협력처 등에서 담당

표 2-27. 농지관리 기금 사업별 관리·지원 담당

사업	사업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과	농지은행처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정보화추진처
농지종합정보화사업		기금관리처
농업진흥지역관리	국제협력총괄과	국제협력처
해외농업개발사업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간척지농업과	새만금간척처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간척농지활용지원사업	농업정책과	

제 3 장

농업금융 여건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1. 농업금융의 대내외 여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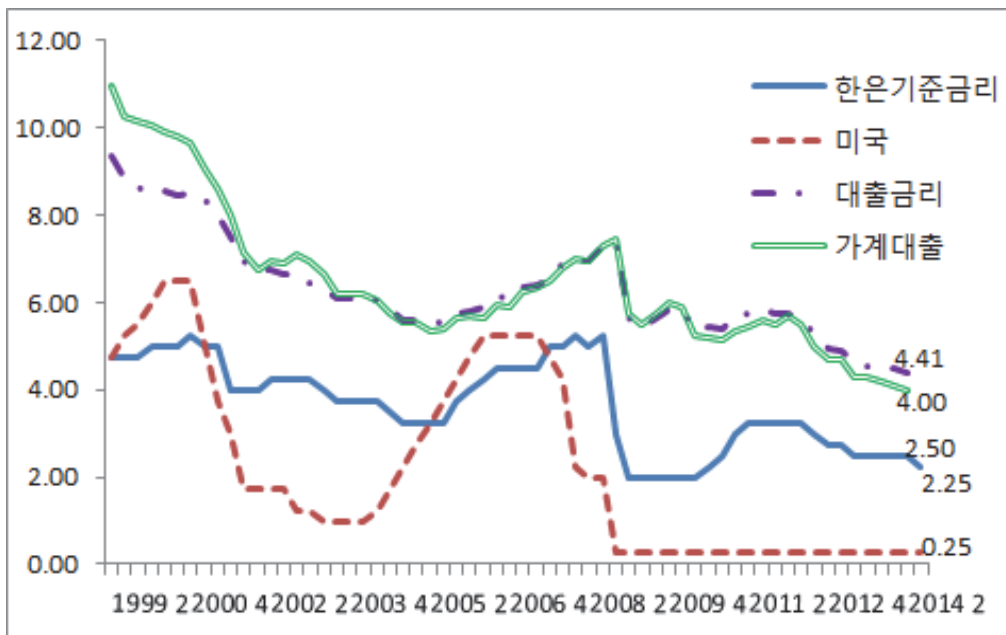
1.1. 저성장·저금리 기조 계속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3-1>.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에 주목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농업금융의 환경변화는 금융자유화·금융혁신,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금융시장의 통합, 위험관리 및 금융감독의 강화 등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변화가 있었음.
 - 2010년대 들어 금융산업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공급측면에서 기업대출보다는 회수가 용이한 가계대출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지만, 가계대출¹⁴ 1,200조 시대를 맞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¹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또는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로 파악하는데, '1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부채는 1,207조 원에 이른다. 이는 '14년 4분기 대비 11.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2.6%)과 물가성장률(0.8%)을 합한 경상성장률 3.4%의 3배가 넘는 수치임.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3% 수준으로 공급되던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잇점이 사라지고 있음.
 - 농가들의 정책금융 금리인하 요구가 높아짐.

그림 3-1. 중앙은행 금리 추이



주: 한은, 미국 기준금리는 2014년 3/4분기까지의 자료이며, 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는 2014년 2/4분기까지의 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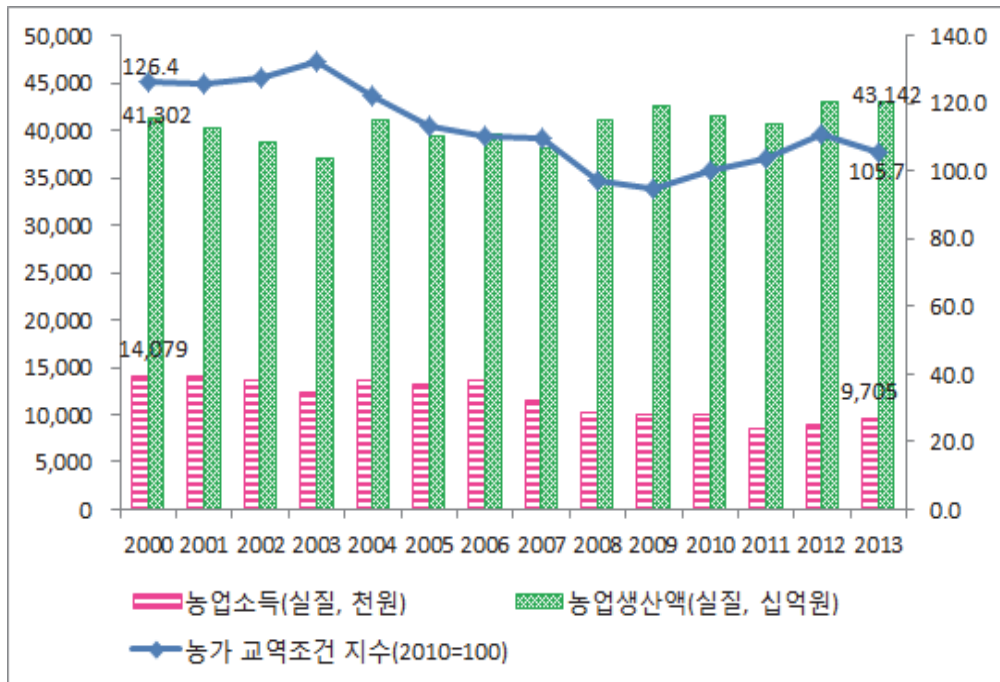
1.2. 금융수요 감소

1.2.1 농업수익성 악화로 신규 금융수요 감소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질 농업생산액 역시 보합상태이고, 농업소득은 오히려 200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교역조건은 126.4(2000년)에서 105.7(2013년)으로 하락

- 당해연도 농가수를 곱하여 소득률을 추정했을 때, 2000년 47.1%에서 2013년 25.6%로 하락하였음.
- 농가의 수익성 악화는 경영주로 하여금 농업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특히 설비개보수가 아닌 신규 투자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됨. 신규 농업금융 수요가 감소하게 됨.

그림 3-2.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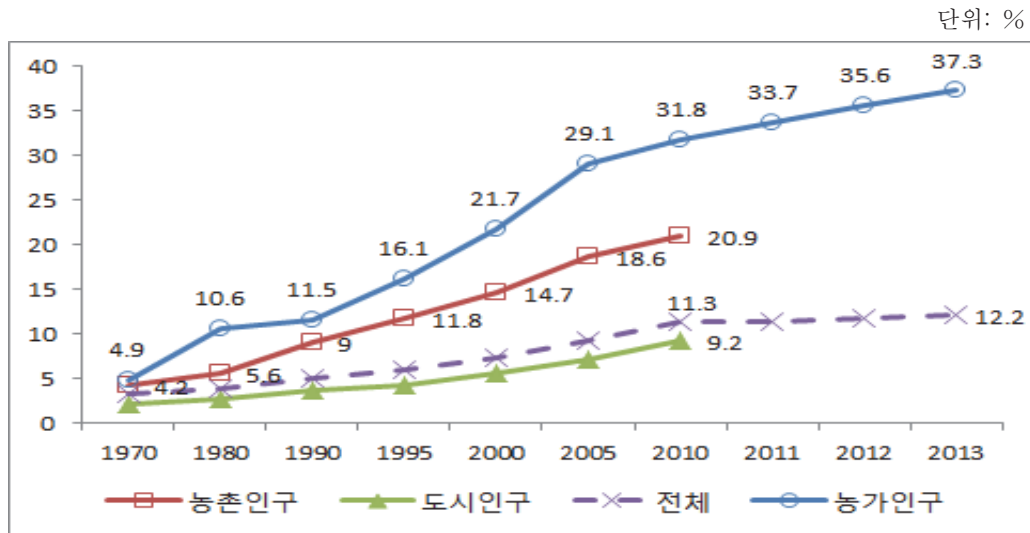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1.2.2. 고령화로 금융수요 감소

- 고령화로 농업생산력의 감소와 함께 저축과 대출의 감소 등 농업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3-3.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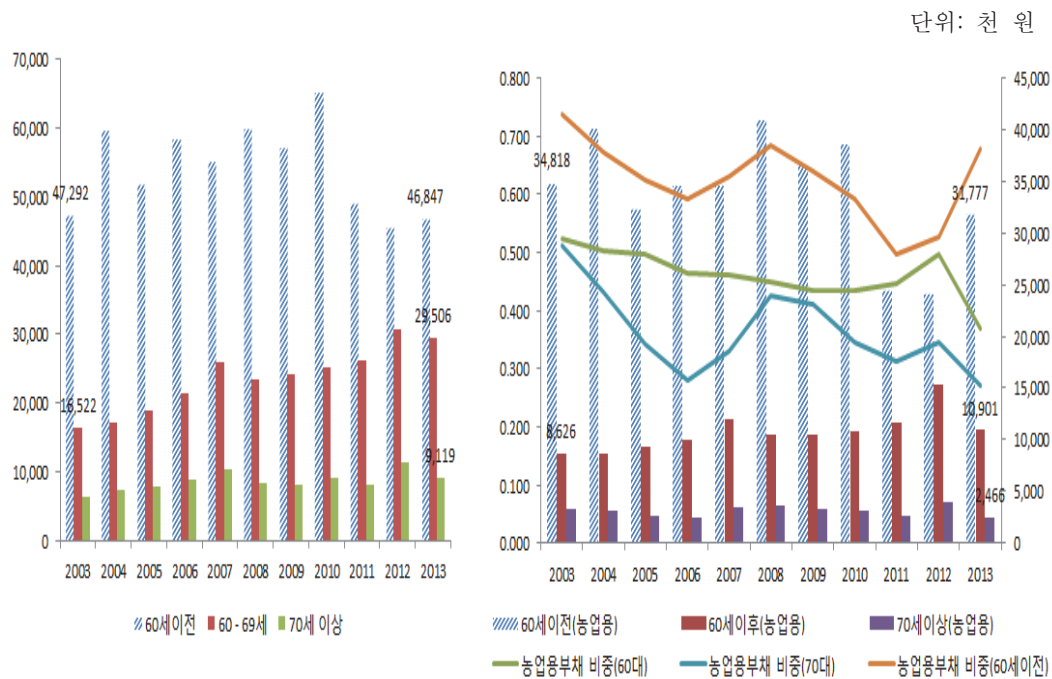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실제로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2003년 2,600만 원 수준에서 2013년 2,7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령별 평균 부채액은 차이가 있음.
 - 소득구조와 마찬가지로 30대의 부채액은 연간 변동이 크게 나타나며 30~50대가 평균부채액을 상회하고, 60대~70대 이상에서는 평균 이하임.
 - 60대 이하의 평균부채액은 2003~2013년 10년 동안 4,500만 원~6,500만 원 사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60대 이상의 평균부채액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부채액이 60대 이하 부채액의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음.
 - 70대 이상의 부채액은 2003년 650만 원에서 상승하여 1,000만 원을 넘었다가 2013년 기준 919만 원임.

- 농업용 평균 부채액은 60대 이상 평균은 2013년 기준 660만 원 수준으로 60대 이하의 21% 수준임.
 - 60대 이하에서는 2003년 3,400만 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금 하락하여 2013년 3,100만 원 정도임.
 - 70대의 농업용 부채액은 매우 작은 수준으로 200만 원~300만 원 수준으로 60세 이전 평균의 7.7%에 불과함. 전체 부채액에서 농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하여 2003년 51%에서 2013년 27%까지 떨어졌음.

그림 3-4.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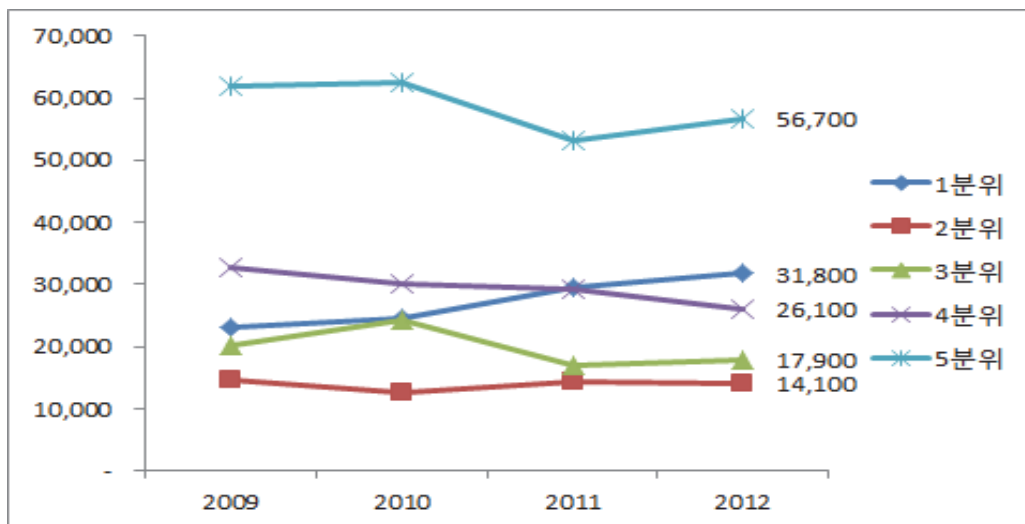
1.3. 다양한 정책금융 필요

1.3.1. 소득분위별 정책금융 수요 차별

- 소득 분위별 부채액을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큰 농가의 부채액은 감소했고 영세한 농가의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1분위 농가의 부채액이 점차 상승하여 2009년 2,320만 원에서 2012년 3,180만 원까지 증가하였고, 5분위 농가의 부채액은 2009년 6,180만 원에 비해 2012년 5,670만 원으로 오히려 하락하였음.
 - 부채액의 5분위 배율 역시 2009년 2.7배에서 2012년 1.8배로 하락하였음.

그림 3-5. 소득분위별 부채액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소득분위별 농가부채비율¹⁵ 추이를 살펴보면, 1분위 농가의 부채비율 증가 추세와 5분위 농가의 부채비율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¹⁵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표 3-1. 소득분위별 부채비율 추이

	2009	2010	2011	2012
1분위	0.124	0.132	0.070	0.139
2분위	0.049	0.032	0.088	0.083
3분위	0.121	0.168	0.067	0.088
4분위	0.159	0.158	0.148	0.157
5분위	0.164	0.142	0.125	0.084

주: 평균값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20이상, -20이하 20개의 관찰치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1.3.2. 농가 유형별 정책금융 수요 다양

- 품목별로는 화훼·특작·축산 농가의 부채비율이 높고, 논벼, 전작의 비율이 낮음.
- 주·부업별로는 예상한 바와 같이 경지규모가 큰 전문농가의 경우 부채비율이 17%이상으로 높았다가 최근 조금 하락하였고 자급농가의 경우 부채비율이 5~6%대로 낮았음.
 - 주업농가와 부업농가를 비교한 경우 2009~2010년에는 주업농가의 부채비율이 높았다가 2011~2012년에는 부업농가의 부채비율이 높아짐.
 - 일반농가와 부업농가를 비교할 경우 부업농가의 부채비율이 높음.
- 자급농가의 비중은 7%수준으로 부채액은 다소 증가하였고, 금융기관차입, 개인차입 모두 증가하였지만 이는 농업용 부채가 아닌 가계용 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임.
 - 평균 부채액은 1,500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 1,850만 원 정도임.
 - 농업용 부채는 총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증가율도 미미하지만, 가계용부채의 경우 2009년 800만 원에서 2012년 1,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3-2. 주·부업별 부채비율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전문	0.1746	0.1848	0.1324	0.1595
일반	0.0933	0.0833	0.0635	0.0636
부업	0.1202	0.1219	0.1092	0.1193
자금	0.0514	0.0908	0.0872	0.0623

주: 평균값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20이상, -20이하 20개의 관찰치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표 3-3. 자금농가의 부채관련 주요 변수 추이

단위: 천 원

	2009	2010	2011	2012
총부채액	14,800	21,000	18,400	18,500
금융기관차입	9,728	15,100	13,500	12,300
개인차입	5,079	5,938	4,903	6,202
농업용부채	1,039	1,692	1,961	1,335
가계용부채	8,046	13,800	11,400	11,1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2. 농업정책금융의 역할¹⁶

2.1.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2.1.1.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은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 즉, 시설투자, 농지구입, 축산 규모 등 영농규모 확대와 관련한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실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지원 역할에 공헌하는 정책수단적인 기능이 강조되어 왔음. 농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보완 역할, 경제발전의 지원 같은 금융의 실물경제지원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부문임.
 - 특히 FTA 추진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약화되면서 농업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완하여 농업성장기반을 유지, 확충하는 농업금융의 역할이 필요

- 농업 의존도가 높은 전업농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 내 농업투자를 하는 영농규모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영농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21.7%)’, ‘비농업투자(6.3%)’, ‘농기계 구입(3.4%)’ 순이었음.
 - 이들의 투자의향 금액은 1억~3억 원 미만에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81.6%가 정부자금을 대출하여 투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부채가 없는 농가의 60% 역시 향후 5년 내 농업분야에 1억~3억 원 미만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대상 농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으로 활발한 영농활동이 기대

¹⁶ 김미복 외(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함.

되는 경우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고 정책금융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수도작·전작과 축산의 경우 영농규모 확대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종합자금 실적을 보면 시설자금 지원실적은 농기계자금을 제외하고서도 2000년 83.1%에서 2013년 7.5%로 크게 감소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00년대 들어 농업에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부채비율, 농업정책금융 총규모의 정체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실제 농업인의 정책자금 수요는 높지만, 실적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성 평가 등 자산규모 이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2.1.2. 금리인하 등 단편적 개선 이외 정책금융의 구조 개선 필요

□ FTA 기금사업의 확대와 농업종합자금의 활성화

- 한-EU FTA 추진 및 한-미 FTA 추진 등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으로 FTA 기금이 도입되었음. 피해보완대책뿐만이 아니라 국내보완대책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원예산업과 축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융자지원만이 아니라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보조지원에는 지자체 보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행정기관이 선정하게 되었음.
- FTA 기금사업의 확대는 농업정책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업종합자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침. 농업정책금융의 금융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대부터 농업종합자금제를 강화하여 왔음.

-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던 농업정책금융을 종합자금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규모도 사업평가에 결정하도록 하였음. 지원대상자도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것을 전문적 평가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반면 FTA 기금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정책금융 운용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지원도 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보조율에 따라 고정되어 있음. 또한 지원대상자도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체제임.
 - 특히 FTA 기금사업은 보조지원을 함께하고 있어 융자지원만 하는 농업종합자금의 선호도를 낮춰 농업정책금융을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하려는 제도개선 내용들이 점차 후퇴하고, 행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종합자금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수익성 악화로 투자수요 감소

- 농가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투자에 소극적이게 하고 있음. 농업 수익성은 기존 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아닌 특히 신규 투자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하여 신규 농업금융 수요를 감소시키게 함.
- 또한 최근 쌀 관세화의 추진, 한-중 FTA의 추진 등으로 농업 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 시장개방의 확대 -> 농업수익성 악화 -> 농가의 투자위축 -> 농업 GDP 정체 및 하락 -> 농업성장의 장기침체 등의 악순환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2.2. 사례분석: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 중소기업의 금융시장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직접금융으로 인한 자금조달도 계속하여 어려워지고 있고, 간접금융으로 인한 자금조달 사정도 나빠지고 있음.
- 중소기업 신용보증, 정책융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총액한도대출 등이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표 3-4. 정책금융의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제도	주요내용
한국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	각 금융기관이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도록 지원
	총액한도대출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채무 이행을 보증
기술보증기금		*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89년 기술보증기금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00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위탁 정책자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중기청 이외 부처	정책자금	각 부처 소관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
지자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병행하여 지자체별로 자체 조성한 재원으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
중기청	모태펀드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온렌딩(on-lending, 전대제도) 방식으로 은행과 리스크 분담 및 간접투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적 지원

자료: 김정렬(2014). 「국내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 현황」. 재인용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토대로 총액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저리자금을 지원
 - 5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중소기업청이 위탁 운영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¹⁷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공단추천-은행대출의 대리대출 방식과 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
 -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용자신청, 접수,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을 실행
 - 현재 중진공의 정책자금대출은 7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운영
- 정책금융공사 간접(on-lending)대출¹⁸: 정책금융공사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금을 금융회사에 공급하며, 금융회사는 대상 중소기업을 발굴,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리를 결정
 - 대출 대상은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 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년도 매출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신청
- 지방자치단체 직·간접대출: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원을 조정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수행
 - 각 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으로 은행 협조유자를 통한 이차보전¹⁹방식으로

¹⁷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 지원

¹⁸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 기술력평가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정책금융공사 자금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 일부 대기업 지원자금으로도 사용

¹⁹ 정책당국이 조건을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조건 충족 여부와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자

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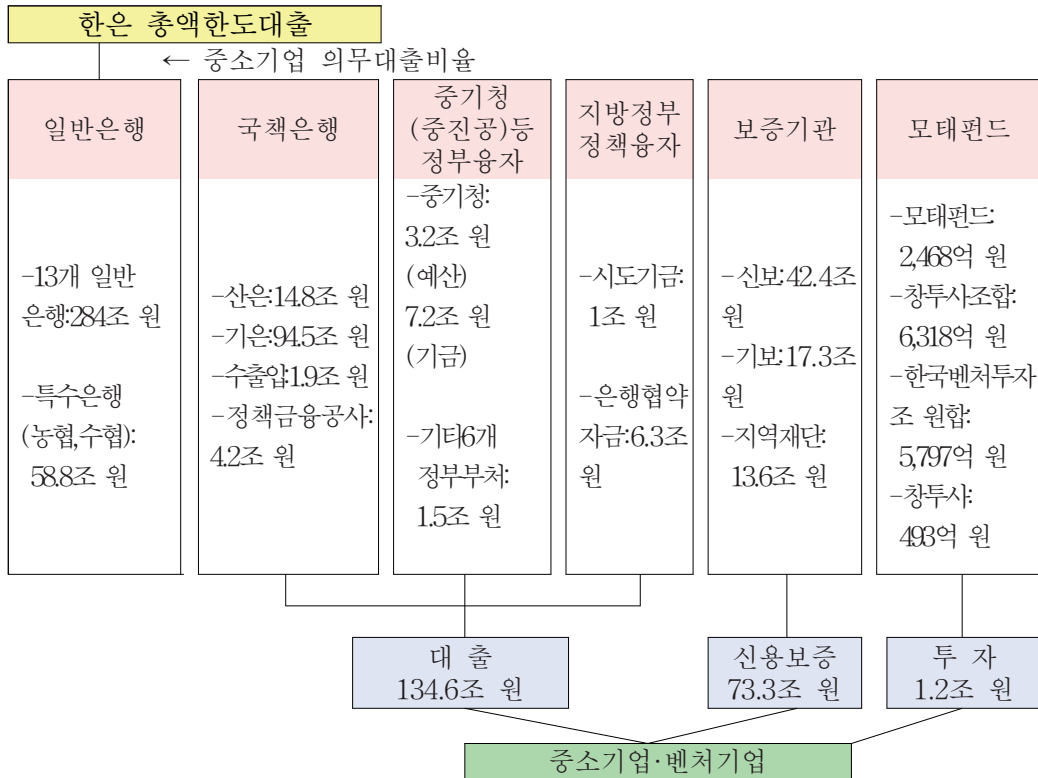
- 기타 직·간접대출: 이 외에도 각 정부부처(미래창조과학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직·간접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
- (출자) '05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적 기금관리 주체들이 자금 출자를 통해 한국 모태펀드와 투자관리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를 설립
 - 6개 공적 출자자²⁰가 제시한 지침에 맞추어 조성된 펀드자금을 총 5대 계정²¹으로 구분하여 운영
 - 한국 벤처투자는 일반적인 투자조합에의 간접투자 이외에, 일자리 창출 펀드, 엔젤투자매칭펀드, 중소·벤처기업 M&A 매칭펀드라는 하위 펀드에 한국모태펀드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
 - 설립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14,791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였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그간 총 3,748개 중소, 벤처기업에 48,947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짐.

금을 대출하되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 수단

²⁰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²¹ 1)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중진계정' 2) 문화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문화계정' 3)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을 위해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특허계정' 4) 방송통신사업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방통계정' 5) 한국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영화계정' 등 다섯 가지

그림 3-6. 중소기업·벤처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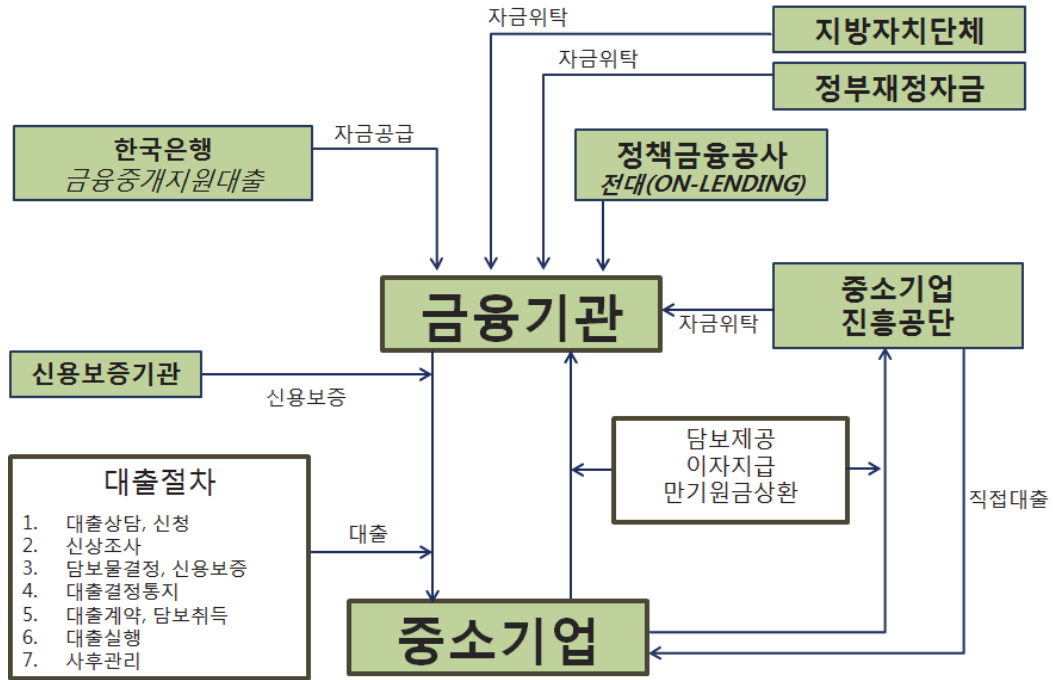
주 1)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은 '11년 기준(언론보도자료).
 2) 지방정부 정책용자는 '09년 계획수치임.

표 3-5. 신용등급별 정책금융 분담 구조

신용등급	건전성	중진공	온렌딩	신용보증
AAA-A	정상	지원제외	지원제외	은행대출 보증
BBB			신용·일부담보 대출	
BB		신용대출		정책자금 보증
B		신용보증대출		
CCC	요주의	신용보증대출	지원제외	지원제외
CC	고정			
C	의문			
D	손실			

주: 지원사업별로 등급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자료: 중소기업청(www.smba.go.kr/).

그림 3-7.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자료: 한국은행(www.bok.or.kr).
중소기업연구원(www.kosbi.re.kr).

제 4 장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실태

1. 농업정책금융 용자조건

1.1. 현황

1.1.1 이자율 별 용자사업

- 무이자 또는 최대 1%인 사업은 규모화사업, 학자금지원 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등임.
 - 농지은행 농지임대차 지원사업은 무이자, 농지매매사업 등은 1%임.

표 4-1. 이자율별(0~1%) 융자사업 구분(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사업	세부사업	금리	상환	거치기간
과원규모화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농지규모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무이자	5~10년	
농지매입비축사업		무이자	5년임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무이자	4년~12년	3년~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산림경영기반조성	1%	5년~15년	10년~20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	7~10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1%	7년	3년
농지규모화	농지교환분합사업	1%	10년	
	농지매매사업	1%	15년 분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로 2015년 8월 3~4% 금리의 사업들이 2.5~3%로 인하되고, 2016년 1월부터 연리 2.5%의 일부 정책금리가 2%로 추가 인하 될 예정
- 축사시설현대화는 준전업농·농업농에게는 보조지원과 함께 2%(보조 20%), 기업농에게 1%의 금리를 적용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중 농업창업자금은 2%의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 구입·신축은 2.7%의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2% 금리 적용 예정임. 농촌주택개량사업 역시 2.7%에서 2%로 0.7%p 금리 인하 예정
 -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일반유형, 지자체개발유형으로 지원형태가 나뉘는데 일반유형의 경우 신청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연 2%의 금리 적용 예정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역시 2016년 1월 1일부터 금리 2% 적용
 - 산림사업종합소득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1.5~2% 금리 적용
 - 그 밖에 과원규모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한우직거래활성화, 원예시설현대화 등의 사업들이 2% 금리적용

표 4-2. 이자율별(~2%) 용자사업 구분(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사업	세부사업	금리	상환	거치기간
과원규모화	과원매매	2%	15~3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전문임업인육성	2%	10년	5년
	해외산림자원개발	1.5%	3년	10~25년
	해외산림투자지원	1.5%	3년	2~1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2%	3년	2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2%	7년	3년
	가공유통시설지원	2%	일시상환	2년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2%	3년	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	7년	3년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1~2%	7년	3년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2%	10년	5년
첨단온실신축지원		1~2%	7년~10년	3~5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신축	2%	10년	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2%	17년~19년	1~3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	7년	3년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2%	7년	3년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	7년	3년
	시설현대화	2%	7년	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주: 2015년 8월, 2016년 1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분 반영.

- 금리가 최대 3%인 사업은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산림소득증대사업,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등임.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3%까지 금리 차등 적용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은 인삼종자 수매와 계약재배 자금지원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삼 및 약용작물 수매는 농업인은 2.5%, 법인 및

기업은 연리 3% 적용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은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4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금리 차등지원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의 브랜드경영체지원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은 2%, 농·축협조합은 3%의 금리 적용, 축산계열화의 경우 영농법인 2%, 농·축협 과 일반기업 3%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연리 0~1% 적용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은 조합 및 법인 등은 3%의 금리를 적용하고 2016년 1월부터 농업인은 시설자금 2%의 금리 적용 예정
-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임업인 대상 3개 사업(산양삼 생산, 단기산림 소득 지원, 조림용 묘목생산)과 사업자 대상 1개 사업(목재이용활성화지원의 임업기계화)의 금리를 각각 0.5~1%p씩 인하
- 사료산업종합지원의 경우 농업인은 2%, 생산자단체는 3% 금리 적용
- 소비자유통활성화사업은 농업인 2.5%, 조합 등 법인은 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의 시설자금은 농업인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 조합 등 법인에게는 3%의 금리를 적용하며, 농업인에게는 2%의 금리적용
- 그 밖에 농축산경영자금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2.5%의 금리를 적용하며, 산림소득증대사업, 소비자참여직거래활성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의 가축방역 사업 등은 3%의 금리 적용

표 4-3. 이자율별(~3%) 융자사업 구분(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

사업	세부사업	금리	상환	거치기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1~2.5%	일시상환	3년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0~3%	일시상환	1~5년
미곡종합처리장 비매입자금 지원		0~3%	1년 이내상환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3%	일시상환/ 7년	3년
	축산계열화사업	0~3%	2년 이내상환/ 7년	3년
농축산경영자금지원		2.5%	1년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2~3%	시설개보수자금 3~10년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자금2년 이내상환	2~5년
	관광농원/농촌민박	2~3%	시설개보수자금 3~10년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자금2년 이내상환	2~5년
	꿀농업가공산업육성	2~3%	2년 이내상환	
	쌀가공산업육성지원	2~3%	시설개보수자금 3~10년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자금2년 이내상환	2~5년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추후관리지원	2~3%	3~10년 /운영자금1년 이내상환 또는 4년	1~3년	
우수기술사업화지원	2~3%	3년	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사립휴양림시설조성	3%	10년	10년
	산양삼생산자금	2.5%	5년	10년
	목재이용활성화지원	3%	2~7년	2~3년
	조림용묘목생산	2.5%	2년	3년
	단기산림소득지원	2.5%	2~7년	3~5년
	사립수목장림조성	3%	10년	10년
	산림조합육성	3%	2~7년	3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임산물유통지원	3%	7년	3년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3%	7년	3년
소비자참여직거래활성화사업		3%	7년	3년
축사시설현대화	가금농가 방역시설개선	3%	7년	3년
학교급식지원센터		2.5%	1년 이내반기상환	
가축분뇨처리시설		3%	7년	3년
소비자유통활성화지원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사업	1.5~2.5%	1년	
	공판장출하촉진사업	1.5~2.5%	1년	
	하체유통개선지원사업	2.5~3%	1년	
	농산물수매지원 사업	2.5~3%	1년	
사료산업종합지원	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2.5~3%	1년 이내 상환	
	사료원료구매 및 자금	2~3%	일시상환/7년	2~3년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농식품시설현대화	2~3%	2년 이내(운영자금)/7년	3년
	외식업체 육성	2~3%	1년 이내(운영자금)/ 3년	2년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2~3%	1년 이내	
말산업육성지원사업		2~3%	7년	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주: 2015년 사업시행지침 기준, 2016년 1월 1일 적용 금리 인하분 반영.

□ 상환기간 별 융자사업

- 거치기간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을 단기(0~1년), 중기(2~5년), 중장기(5~15년), 장기(15년 이상)로 구분하였음.
 - 단기에 포함되는 사업은 주로 경영자금으로 농축산 경영자금, 소비자유통합성화지원사업, 식품의식 종합자금 사업 등임.
 - 중기에 포함되는 사업은 종합자금 중 시설자금이 아닌 특정 사업 육성에 해당되는 사업임. (예를 들면, 꿀, 녹용가공산업육성, 외식업체육성 등) 조사료 관련 사업은 중기사업임.
 - 중장기 사업은 종합 자금 중 시설관련 사업임.
 - 장기사업은 사립휴양림시설조성, 해외산림자원개발, 과원매매, 농지매매 사업, 산림경영기반조성 같은 토지에 관련한 사업임.

표 4-4. 상환기간별 융자사업 구분

	사업	세부사업	상환	거치기간	
단기 (0~1년)	농축산경영자금지원		1년		
	미곡종합처리장 비매입자금		1년		
	소비자유통합성화지원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사업		1년	
		공평정출하촉진사업		1년	
		하체유통개선지원사업		1년	
		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1년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1년	
식품의식종합자금사업	식품기공원료매입지원	1년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일시상환	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1년			
중기 (2~5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공유통시설지원	일시상환	2년	
	농업종합자금지원	꿀 녹용가공산업육성	2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일시상환	3년	
	농업종합자금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	3년	2년	
	농지매입비축사업		5년입대		
	산림사업종합자금	조림용묘목생산	2년	3년	
	식품의식종합자금사업	외식업체 육성	1년/3년	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3년	2년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3년	2년	
중장기 (5~15년)	가족분노처리시설		7년	3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7~10년		
	과원규모화	과원입대차	5~10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신축	10년	5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7년	3년	
	산림사업종합자금	해외산림투자지원	3년	2~10년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에 축산 가공사업등지원	3~10년	시설개보수		

	사업	세부사업	상환	거치기간
중장기 (5~15년)			2년	2~5년
		관광농원/농촌민박	3~10년 2년	시설개보수 2~5년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수후관리지원	3~10년 1년	1~3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10년 2년	시설개보수 2~5년
	농업경영희생자금지원		7년	3년
	농지규모화	농지교환분합사업	10년	
	농지규모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5~10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4~12년	3~4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원료구매자금	2~7년	2~3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산양삼생산자금	5년	10년
		전문임업인육성	10년	5년
		목재이용활성화지원	2~7년	2~3년
		단기산림소득지원	2~7년	3~5년
		사립수목장립 조성	10년	10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임산물유통지원	7년	3년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7년	3년
	소비자참여직거래활성화사업		7년	3년
	식품위식종합자금사업	농식품시설현대화	2년	3년
			7년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7년	3년
		시설현대화	7년	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7년	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7년	3년
	첨단온실신축지원		1~3%	7~10년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7년	3년
		가금농가 방역시설개선	7년	3년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일시상환 7년	3년	
		2년		
	축산계열화사업	7년	3년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7년	3년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10년	5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7년	3년	
장기 (최대 15년 이상)	산림사업종합자금	사립휴양림시설조성	10년	1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해외산림자원개발	3년	10~25년
	과원규모화	과원매매	15~3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7~19년	1~3년
	농지규모화	농지매매사업	일시납부및 최장30년에서15년분할납부	
	산림사업종합자금	산림경영기반조성	5~15년	10~20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1.2. 유사사업 용자조건 검토

- 원예시설 관련한 사업 중 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첨단온실신축지원(이차보전) 사업을 검토하였음.
 -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은 대상품목이 다양하고, 대상농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사업 내용은 유사하지만 실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중복된다고 보기가 어려웠음. 즉, 현장에서는 품목별로, 대상농가 단위에서는 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완벽히 중복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님.
 - 하지만, 사업대상 농가 중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보조가 포함된 원예시설현대화사업보다 종합자금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규모있는 전업농가인 전문농가 수준의 농가들이 보조사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

표 4-5. 원예시설 관련 유사사업 비교

▪ 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첨단온실신축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내용	고품질·안전 원예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사업기간	2004~2017	2013~	1970년 ~ 계속 / 계속사업
▪ 지원대상	과수농업인,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농업인	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 등
▪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	융자	이차보전금,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보조20, 융자 30, 지방 30, 자담 20	국비용자 100% - 금리 1~2%, 5년거치 10년상환	이차보전 기준금리*와 농업자금 대출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3년 거치 7년 상환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 20, 융자 30, 지방 30, 자담 20 3년/7년 - 금리 2%,		이자차액을 지원 * 기준금리 :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 가중평균금리
▪ 시행주체	지자체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표 4-6. 원예시설 관련 세부 용자조건

재원	사업	세부사업	금리	상환	거치기간
농협자금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 사업 등 지원	2~3%	시설개보수 자금 3~10년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	
FTA자금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	7년	3년
FTA자금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시설원예품질개 선사업	2%	7년	3년
농특회계	첨단온실신축지원		1~2%	7~10년	3~5년

주: 2015년 용자조건 기준. 2015년 8월, 2016년 1월 금리인하 분 반영.

- 축산 관련한 사업 중 생산 관련 사업인 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이차보전)을 검토하였음.
 - 사업시행 지침서 기준으로는 사업대상 및 지원방식을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의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준)전업농 농가에게는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성되는 사업이고, 기업농에게는 자부담, 융자(이차보전)으로 구성된 사업임.
 - 기업농 입장에서는 종합자금 사업과 동일한 사업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기업농을 제외할 수 있음.
 - 전업농 농가 입장에서도 보조가 포함된 사업보다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비 결정, 융자금액을 지자체가 아니라 전문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자금 재원 별로 사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표 4-7. 축사시설 관련 유사사업 비교(사업조건)

▪ 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축산경영종합자금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내용	축종별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	(브랜드경영체지원) 브랜드 회원농가 생산 지원 브랜드 경영체 운영 지원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가축계열화)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지원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사업기간	2004~2017		1970년 ~ 계속/ 계속사업
▪ 지원대상	축산농가(준전업농 ~ 전업농, 기업농)	축산농가	농업인 등
▪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	이차보전, 민간보조	이차보전금,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축사시설) 보조30%, 융자50, 자담20 (우량송아지) 보조20%, 융자40, 지방비20, 자담20 (ICT융복합) 보조30%, 융자50, 자담20 * 융자조건 : 연리2%,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1~2%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30%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2~3%(영농법인 등 2%, 농·축협 3%, 일반기업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이차보전 기준금리*와 농업자금 대출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지원 * 기준금리 :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 가중평균금리
▪ 시행주체	지자체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표 4-8. 축산 관련 세부 용자조건

재원	사업	세부사업	금리	상환	거치기간
농협자금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3%	시설개보수 자금 3~10년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	
FTA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1~2%	7년	3년
농특회계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2~3%	일시상환 /7년	3년

○ 축산 관련한 사업 중 가축분뇨 관리 사업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검토하였음.

- 사업내용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대상 농가 측면에서 가축분뇨 시설을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인지 모호할 수 있음. 즉, 사업대상자 특성에 맞게 사업이 설계되어 전문화 정도에 따라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역시 가축분뇨와 관련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표 4-9. 가축분뇨 관련 유사사업

구 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내용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퇴액비 자원화조직체에 출하선급금 등 운영자금 지원 및 퇴액비 시범포운영, 연찬회등 교육홍보지원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퇴비·액비 등 생산·이용 활성화	축종별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
▪ 사업기간	'07년~계속사업	'91년~계속사업	2004~2017
▪ 지원대상	축산·경종농가,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준전업농 ~ 전업농, 기업농)

▪ 지원형태	국고보조, 융자	국고보조, 융자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국고보조 100%, 융자 70%(연 2%, 3년거치 일시상환)	국고보조 20~70%, 지방비 20~50%, 국고융자 20~50%, 자부담 20~30%	(축사시설) 보조30%, 융자50, 자담20 (우량송아지) 보조20%, 융자40, 지방비20, 자담20 (ICT융복합) 보조30%, 융자50, 자담20 * 융자조건 : 연리1~2%, 3년거치 7년상환
▪ 시행주체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등	시·도, 시·군	지자체

표 4-10. 가축분뇨 관련 세부 융자조건

재원	사업	세부사업	금리	상환	거치기간
농특회계	가축분뇨처리시설		3%	7년	3년
FTA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1~2%	7년	3년

1.3. 정책자금 금리

1.3.1. 농가 이자부담

-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현재 평균 농가의 이자부담이 그리 큰 편은 아님.
 - 평균 농가의 지급이자액이 2003년 60만 원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13년 기준 41.5만 원임.
 - 이는 농가경영비 대비 2%. 농가소득대비 1.2%로 2003년 이후 점차 낮아짐.
- 평균 농가의 이자부담 이외에 50대 이하로 연령을 조정할 경우 농가의 이자부담액은 2013년 기준 평균 150만 원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 평균에 비하면 이자부담은 크게 증가함.
 - 이들의 평균표준영농규모는 2.54ha, 평균부채비율은 0.12, 평균부채액은

4,990만 원, 평균소득은 5,210만 원으로 영농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농가임.

- 한편 실제농가설문조사²²에 따르면, 연 이자부담금은 300만 원 미만이 37.7%였으나 15.6%에 해당하는 농가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 농가경제조사 결과²³보다도 실제 조사대상 농가, 즉 영농 경력 10년 이하, 40대 농가의 경우 이자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표 4-11. 농가의 연간 이자부담

	300만 원 미만	300만~500만 원	500만~1,000만 원	1,000만~3,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계
응답 수 (%)	109 37.7%	79 27.3%	56 19.4%	34 11.8%	11 3.8%	289 100%

자료: 김미복 외(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 재인용.

1.3.2. 농업자본수익률

- 평균 농가의 금융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자본수익률²⁴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1994년 7.6%에서 2004년 3.8%, 2014년 0.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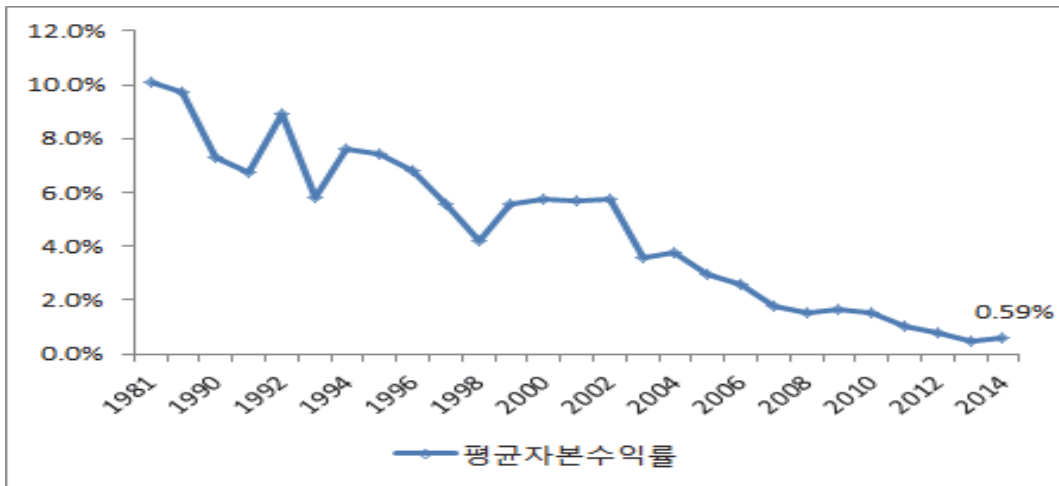
²² 김미복 외(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결과 인용

²³ 평균 농가의 이자부담 이외에 50대 이하로 연령을 조정할 경우 농가의 이자부담액은 2013년 기준 평균 150만 원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 평균에 비하면 이자부담은 크게 증가함. 이들의 평균표준영농규모는 2.54ha, 평균부채비율은 0.12, 평균부채액은 4,990만 원, 평균소득은 5,210만 원으로 영농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농가로 여겨짐.

²⁴ 농업자본수익률은 자본순수익을 농업자본액으로 나눈 값임. 이것이 차입자본이자율(즉, 정책금리)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만일 어떤 농업경영체가 자신의 자본을 모두 은행에 이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본소득 즉, 이자소득보다도 농업소득이 작으면 농업을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단순한 논리임(박성재 외, 2000). 자본수익률과 적정정책금리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따라서 여러 한계가 있음. 하지만, 자본수익률의 장기추세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자본수익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가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거나 투자 확대한 필요한 분야에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함.

그림 4-1. 농가의 평균자본수익률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평균보다 2종 겸업의 자본수익률이 오히려 낮았고, 예상한 바와 같이 전문, 일반, 부업, 자금 농가 순으로 높은 자본수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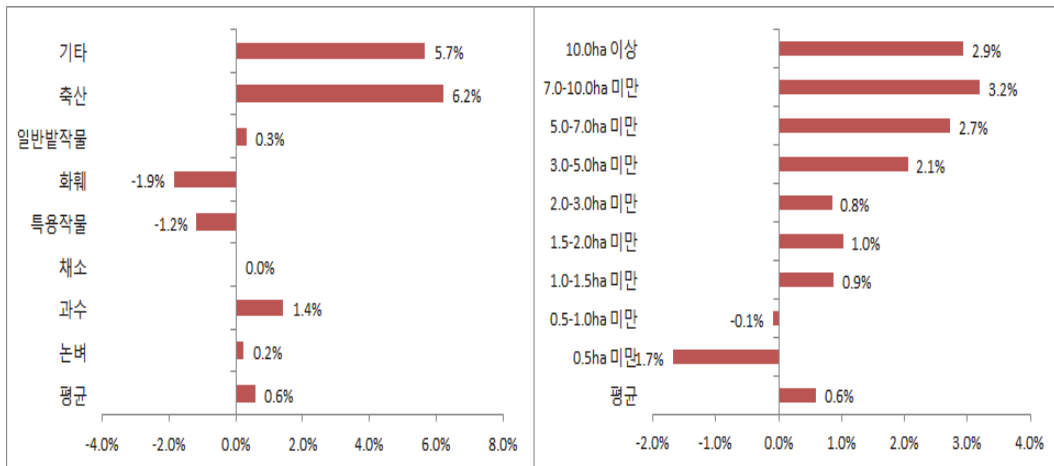
그림 4-2. 전·겸업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품목별로는 축산이 높았고, 과수도 1.4%로 평균 이상임. 경지규모 별로는 1ha를 기준으로 1ha미만은 (-)자본수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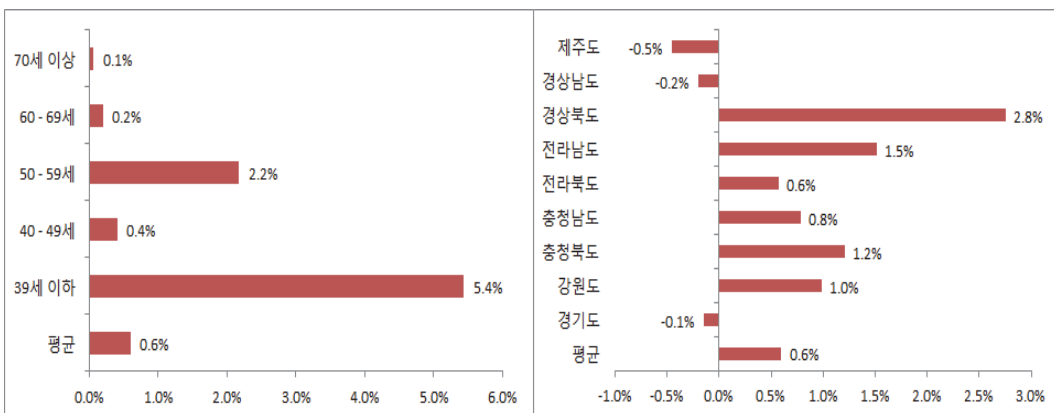
그림 4-3. 품목별·경지규모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의 자본수익률이 매우 높았고,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남. 30대 이하의 자본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조수입이 높기 때문인데, 30대 이하에서 농업소득 역시 가장 높음.

그림 4-4. 연령별·지역별 농가 자본수익률 비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자본수익률이 다양하다는 점은 다양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연관됨.
 - 보조방식은 정책대상 범위를 좁혀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재정효율화를 위해 용자정책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에서 품목별, 규모별 자본수익률의 차이는 용자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시사함.

1.4. 농업시설자금 용자조건 적용 BP분석

□ 유리온실

- (공통적용사항) 원금 10a당 3억 원, 할인율 1.75%, 이자율 1%, 시설내구연수 30년 적용²⁵,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임.
 -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임평가액, 감가상각비 등의 적용은 2014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참조하였음(농촌진흥청).
- (토마토 반축성) 조수입 14.3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1/5 수준에 그침.
 - 유리온실일 경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당 52.3kg를 생산했을 때, 비용과 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슷해짐.
- (토마토 축성) 조수입 25.7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38% 수준임.
 - 유리온실일 경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당 53.8kg를 생산했을 때, 비용과 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슷해짐.

²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전문가에 의하면 대략 30년 가량을 고려함. 일본에서는 20년 정도를 적용함.

- (파프리카) 조수입 42.4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66% 수준임.
 - 유리온실일 경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당 45.3kg를 생산했을 때, 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넘어섬.
 - 유리온실 파프리카의 경우 60~100kg/평의 생산성을 보이는 농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KREI 현장브리프 제1호, 2015).
 - 2014년 기준 소득자료집에는 38.8kg/평

□ 비닐온실

- (공통적용사항) 원금 10a당 7천5백만 원, 할인율 1.75%, 이자율 1%, 시설내구연수 15년 적용²⁶,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임.
 -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임평가액, 감가상각비 등의 적용은 2014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참조하였음(농촌진흥청).
- (딸기 반축성) 조수입 19.9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94% 수준으로 비용대비 수입이 좋은 편임.
 -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당 10.7kg를 생산했을 때, 비용보다 수입이 높아짐.
- (시설참외) 조수입 9.7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30% 수준으로 비용대비 수입이 좋지 않음.
 -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당 21kg를 생산했을 때, 비용과 수입이 비슷해짐.
- (수박 반축성) 조수입 5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수입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23% 수준에 그침.

²⁶ 전문가에 의하면 대략 15년 가량 본다고 함. 일본에서는 10년 정도를 적용함.

- 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평당 35.7kg를 생산했을 때, 비용과 수입이 비슷해짐.

□ 축사

- (우사) 원금 10a당 3억 2천5백만 원, 할인율 1.75%, 이자율 2%, 시설내구연수 10년 적용,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임.
 - 한우비육우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임평가액, 감가상각비 등의 적용은 2012~2014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참조하여 3개년 평균하였음(농촌진흥청).
 - 조수입 432.3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비용 대비 수입이 23.5%에 그침. 이 때 두당 수입은 6백만 원임.
 - 24개월 사육, 방사식을 적용하였을 때, 1년 마리당 조수입이 3.4백만 원 일 경우 수입이 비용을 넘어섬.
 - 이자율 1%를 적용하면, 마리당 조수입이 3.39백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돈사) 원금 10a당 8억 2천5백만 원, 할인율 1.75%, 이자율 2%, 시설내구연수 10년 적용,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임.
 - 비육돈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임평가액, 감가상각비 등의 적용은 2012~2014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참조하여 3개년 평균하였음(농촌진흥청).
 - 일관경영방식²⁷, 연간회전수 2회를 적용하여 면적당 조수입 844.6백만 원을 적용하였을 때, 수입이 (-)임. 이 때 마리당 조수입은 34만 원
 - 마리당 조수입이 41만 원일 경우 수입이 비용을 2배 이상 넘어섬. 약 38.7만 원 일 때가 분기점임.
- (육계사) 원금 10a당 4억 5천만 원, 할인율 1.75%, 이자율 2%, 시설내구연수 10년 적용,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임.

²⁷ 1,230마리/10a.

- 육계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임평가액, 감가상각비 등의 적용은 2014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참조하였음(농촌진흥청).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서 상의 사육면적 지침, 9.4회전을 적용하였을 때, 조수입은 424.5백만 원이고, 비용 대비 수입이 63%임. 이 때 마리당 수입은 2,060원임.
 - 마리당 조수입이 2,109원일 경우 수입이 비용을 넘어섬.
- (산란계사) 원금 10a당 9억 원, 할인율 1.75%, 이자율 2%, 시설내구연수 10년 적용,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임.
- 산란계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임평가액, 감가상각비 등의 적용은 2014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참조하였음(농촌진흥청).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서 상의 사육면적 지침을 때, 조수입은 849.8백만 원이고, 비용 대비 수입이 2배를 넘어섬. 이 때 마리당 수입은 35,693원임.
 - 마리당 조수입이 33,300원 수준 일 경우 수입이 비용을 넘어섬.

2. 농업정책금융의 제도 변화

2.1.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차보전 전환

-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차보전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있지만, 재정운용효율화를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의 종류는 늘리는 추세임.
 - 회임기간²⁸이 5년 이하인 융자사업은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²⁸ 회임기간이란 편익이 발생하기 전 순수하게 지출만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함.

<재정사업 관리규정>

제34조(요구안 편성원칙)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용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1.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용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용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용자사업은 재정용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김지영·박상원(2008)은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비교했는데, 이차보전방식의 후생이 직접용자, 신용보증, 전대방식의 사회적 후생보다 높았음.
 - 사회적 후생은 차입자의 효용, 금융기관의 이윤, 자원조달의 사회적 손실을 모두 합한 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원배분의 측면에서는 이차보전이 가장 효율적임을 증명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재원이 동일할 경우, 차입자의 규모 즉, 수혜자의 수는 직접용자방식과 신용보증방식이 이차보전방식보다 크며, 전대방식 역시 이차보전방식보다 투자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차보전방식과 직접용자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자금을 활용해야 하는 사업과 정부가 직접 용자해야하는 사업을 대상·품목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2.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전환

-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농업정책자금 기준금리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농협중앙회(현 NH농협은행) 기준으로 2003년 8.4%에서 2014년 4.11%로 하락하였음.

- 이에 정부는 2014년 1월 3개 용자사업에 대한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사업을 도입한데 이어 2015년 8월 추가로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사업 확대를 하였음.
 - 농지규모화 사업은 2%에서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은 3%에서 1%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에서 2.7%(단, 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2014.1. 보도자료>
 - 2015. 8.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2015.7 보도자료>
 -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문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표 4-12.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사업('15년 8월 적용)

분야	용자대상 (금리)	사업명
시설 자금	농업인 (3%→1.8~2.5%)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이차), 원예시설 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 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이차), 시설원에 효율화,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식품시설 현대화, 말산업 육성,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
	법인 (4%→2.8~3%)	도축가공업체 지원, 농식품시설 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사료산업 종합지원, 외식업체 육성, 농업 종합자금(농기계, 이차)
운전 자금	농업인 (3%→1.8~2.5%)	농축경영자금(이차), 농업종합자금(이차), 식품외식종합자금, 인삼 약용작물 계열화(이차), 소비지 유통활성화 지원(수매, 직거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도축가공업체 지원(이차), 농공상용복합형·중소기업 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수매 지원), 사료산업 종합지원(직거래), 말산업육성, 농산물 브랜드 육성, 인삼 약용작물 계열화,

분야	융자대상 (금리)	사업명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산지유통종합자금(활성화),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법인 (4%→2.8~3%)	사료산업 종합지원,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 지원(이차), 소비지 유통활성화 지원, 인삼 약용작물 계열화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 말산업 육성,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 또한 정부는 국내 보완 대책 지원 및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간 금리차 축소 등 정책자금의 실효성 약화로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 2.5% 자금의 고정금리를 2.0%로 추가 인하 결정,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표 4-13. 농업정책 시설자금 추가 금리인하 사업('16년 1월 적용)

분야	융자대상 (금리)	사업명
시설 자금	농업인 (2.5%→2.0%)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이차), 원예시설 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 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이차), 시설원예 효율화,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식품시설 현대화, 말산업 육성,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이차), 사료산업종합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농특, 이차), 귀농인창업지원자금(이차)주택구입자금

□ 정부의 금리인하와 예산 부담 추정²⁹

- 현재 농업투자가 저조한 상황과 시중 대출금리가 4%대인 점을 감안하면 하향조정이 필요했음.
- 사업마다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3% 정책자금 사업이 시중금리와 연동, 하향 조정되면 0~3% 모든 금리의 하향조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차보전 대출금리의 하향조정 또는 변동금리방식의 도입도 동시에 가능함. 여기서 신규대출 적용, 기존잔액에 모두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됨.

²⁹ 김미복 외(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에서 발췌하여 요약하였음.

-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 및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 할 경우 정부의 추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 용자사업의 금리를 25bp 인하, 50bp 인하, 100bp 인하할 경우, 동시에 고정이차를 3%, 2.5%, 2%로 유지할 경우 추가 비용을 추정하였음.
 - 기존 잔액 모두에 적용하였음.
- 정책 금리를 일괄적으로 100bp 즉, 1%p 인하하고 고정이차를 3%로 유지할 경우에 2,900억 원 가량으로 추가비용이 가장 높았음.
 - 대출금리를 50bp 인하하고 고정이차 2.5% 수준인 경우는 25bp인하, 고정이차 3% 수준과 비용차이가 30억 원에 불과함. 고정이차가 줄어 들수록 현재 이차보전으로 커버가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 금리인하를 100bp할 경우, 현재 이차보전방식을 유지한다면 2,015억 원이 소요되지만, 고정이차 2%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2,078억 원이 소요됨. 약 60억 원의 비용으로 혜택 농가의 확대효과를 볼 수 있음.

표 4-14. 금리인하 추가비용 변화

단위: 백만 원

	25bp	50bp	100bp
변동	50,343	100,758	201,590
고정3	139,830	190,246	291,078
고정2.5	92,916	143,332	244,164
고정2.0	56,561	106,977	207,808

□ 중소기업진흥공단 금리 변경 사례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경적용 기준일 : 2015.10.10.
-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에 모두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표 4-15. 정책자금 기준 금리

구 분	'14. 4/4분기	'15. 3/4분기	'15. 4/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07% (조달금리 -0.79%p)	2.70% (조달금리 -0.93%p)	2.60% (조달금리 -0.93%p)

○ 정책자금 사업별 기준금리

표 4-16. 정책자금 사업별 기준 금리

사 업 명 구 분		'14. 4/4분기	'15. 3/4분기	'15.4/4분기
		기준금리-0.15%p	기준금리-0.08%p	기준금리-0.08%p
창업 기업 지원	창업기업지원자금	2.92%	2.62%	2.52%
	청년전용창업자금		- 고정금리 :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 '13년 이전(2.7%), '14년(2.9%), '15년(2.7%)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재도약지원(사업전환, 무역조정, 재창업)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2.92%	2.62%	2.52%
신성장기반 및 긴급경안(수출금융, 일반경안)		기준금리+0.4%p 3.47%	기준금리+0.5%p 3.20%	기준금리+0.5%p 3.10%
			'14년 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	
긴급경영안정(일시애로) 및 재도약지원(구조개선)		기준금리+0.9%p 3.97%	기준금리+1.05%p 3.75%	기준금리+1.05%p 3.65%
			메르스 피해 접수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3%p(2.37%)	
소상공인 지원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기준금리+0.4%p 3.47%	기준금리+0.5%p 3.20%	기준금리+0.5%p 3.10%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3% 고정	
	'15년 이후 접수분		▪ 소진공 홈페이지 공지 참고	
재해자금 (긴급경안 및	'10.10.19 이전추천기업	특별재해: 3%고정 일반재해:	특별재해: 3% 고정금리 일반재해: 정책자금 기준금리 - 1.23%p(1.37%)	

		기준금리-1.23% (1.84%)	
소상공인)	'10.10.20~'14.04.09 추천	3% 고정	3% 고정금리
	'14.04.10~'14.12.31 추천	별도금리 2.70%	2.7% 고정금리
	'15년 이후추천기업		2.5% 고정금리 ('15년 이후 소상공인 재해자금은 소진공 홈페이지 별도 공지)
	세월호 사고피해기업 ('14년 지원)	피해자·유가족 운영 사업체 : 0%(무이자) 차량·화물피해 사업체 : 2% 고정금리 (단, 피해금액 7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확인기업 : 0%(무이자))	
	소상공인특별자금 ('14년 지원)		소상공인지원자금기준금리- 0.53%(2.57%)

※ 참고.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5.7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7.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1일부터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힘.
-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2천명도(농업인 367천명, 어업인 3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문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음.
-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

(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자금, 어업자금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분야) 8.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
- (수산분야) 8.1일부터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어업인 1.8%, 조합등 2.8% 수준)

- 정부관계자는 “금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인하로 연간 약 431억 원~837억 원*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함.

* 변동금리 선택시 837억 원, 고정금리 선택시 431억 원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5.11

- 정부는 11월 30일 여야정합의를 통해 한중FTA 국내 보완 대책 지원 및 시중금리 인하로 정책자금 간 금리차 축소 등 정책자금의 실효성 약화로 인해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 2.5% 자금의 고정금리를 2.0%로 추가 인하 결정
- (고정금리)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개보수 포함) 2.5% 자금은 2.0%로 인하
- (적용시기) '16.1.1월부터 즉시 적용
- (대상사업)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제 5 장

농업정책금융 개선 방안

1. 개선과제

1.1. 그룹별 금융수요를 파악하여 성장경로별 금융지원체계 구성

- 농업정책금융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성장을 촉진하도록 농업정책금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농업구조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저금리의 금융시장 도래에 따라 농업정책금융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
- 소득보조 기능을 하던 자금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금융방식을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저금리 이점보다는 소액신용보증해 단기자금이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정책금융지원의 목표 그룹을 금리혜택, 담보부족 보완, 투자로 구분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직접대출은 금리혜택이 필요한 그룹에, 신용보증은 사업성 평가 위주로

하여 신규진입농, 후계농, 기술금융의 자금지원에, 투자는 민간금융과 협조하여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함.

- 이와 같이 농업정책금융에서 소득보조의 기능, 저리융자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투자지원 방식 등의 정책수단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2. 농업부문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용자조건 개선

- 정책금융지원에 따른 필요한 조건의 충족 및 관리비용까지 고려하면 금리 면에서 장점이 없음. 한-중 FTA의 추진 등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환경에서 농업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융의 금리인하를 포함한 용자조건 개선이 더욱 요구됨.
-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농업투자를 하였을 때는 사용내역에 대한 신고의무 등 다른 관리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의 수요가 감소하여 불용되기도 함.
- 정책금융의 소득보조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활용하여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와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저금리 혜택이 필요한 사업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이자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현재 농업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자조건 및 대출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1.3.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

- 현재 농업부문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대출과 보증으로 단순화되어 있음.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직접대출, 사업성 평가 위주의 신용보증, 모태펀드 등 농업전문투자자로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고 이차보전사업과 직접대출사업 간 금리 차이를 두는 등 정책금융 기능별로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부의 재정운용효율화 추세에 따라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만큼 대출심사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정부자금을 활용하는 것보다 부족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2.1. 농업정책금융의 각 기관별, 기능별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중복지원 방지

- 대출기관의 역할, 보증기관의 역할, 농안기금 등 기금관리기관의 역할을 단순화하여 재원별·기관별로 중복사업이 생기는 것을 방지
- 한-미, 한-EU FTA 추진 등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마련되면서 정책사업이 새롭게 확대되어 정책금융 종류가 늘어나고 품목별로 세분화되었음.
 - 농업정책금융 대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약 122개 과목으로 자금지원 사업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음.
 - FTA 대책에 따른 새로운 사업은 품목별 대책인 경우가 많아 사업마다 금리수준, 보조금 비율,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동일 사업 내에

서도 참여주체에 따라 금리와 보조금 비율이 다른 특징이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농업정책금융을 농업종합자금으로 단순화하고, 보조 지원을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에서 다시 변화된 것임.
 - 보조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도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주체가 전환되었고, 대출기관은 대출절차를 별개로 유지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어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음. 이에 행정기관으로서도 관리감독비용이 상당한 실정임.
- 행정기관은 보조금 관리,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사업과 관련한 보조 및 투융자, 대출기관은 대출자선정,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관리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2.2. 고위험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다양화

- 농축산경영자금 등 영세자금 정비 필요함.
 -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의 단기자금경색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한 자금으로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1960년대 공급이 시작된 자금임. 현재 대출조건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2.5%) 중 선택이고 기간은 1년 이내 단기자금임.
 -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전업농의 경영자금은 종합자금의 운전자금으로 유도하고, 농축산경영자금은 고령영세농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반적으로 농업인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나 고위험농가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

- 요함.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경영위험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의 완화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여주고, 충분한 기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설한 농업활동 중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 이 자금은 연체율은 높으나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높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 * 매년 200억~600억 원 씩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집행률은 30~40%
 - * 누적 실적에 따르면 1인당 평균대출액은 8,300만 원이고 2012년 기준 151농가에 196억 원이 투자
- 위험농가의 유형이 구분되는 만큼 경영회생자금 역시 단기소액자금과 1억 원 이상의 자금 수요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대출조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금공급처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계농에 자금을 지원한 후 이에 대한 컨설팅, 클리닉 기능이 동반되어야 장기적으로 경영회생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경영회생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연체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임.
 - 위험농가의 경우 대출 기관 입장에서 이자 수익 보다는 대출원금 상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클리닉 등 사후관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체율을 낮추고,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2.3. 정책금융은 담보중심에서 사업성 중심 지원 강화 필요

- 이제까지 농업정책금융은 보조금과 함께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규모있는 농가의 금융활동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성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농가경제조사통계를 이용한 부채비율 등 금융지표를 살펴보면, 경지면적 3ha 이상 전문농가의 부채액은 2009년 5,130만 원에서 2012년 4,630만 원까지 하락하였음. 금융기관 차입액은 2009년 4,250만 원에서 2012년 3,930만 원으로 하락하였고, 금융기관 차입비중 역시 80~85%에서 정체되어 있음.
- 규모 있는 건전한 농가들의 자본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사업성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경영활동이 활발한 농업경영체의 자본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체의 매출액, 소득의 정확한 자료 구축이 담보되어야 함.
 - 자료부족으로 사업성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대한 회계정립, 농업회계장부 작성 등 사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2.4. 농업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 농업부문에서의 기술금융으로는 농신보의 기술신용보증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지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농식품전문모태펀드의 지원이 있음.
 - 농신보가 신용보증으로 기술금융을 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창업농에 대한 보증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평가에서 우대하는 정도임.
-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에는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은 미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술보증지원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하여 활용하는 기술력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이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핵심과제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관(Technology Bureau: TB)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농식품부문 기술가치평가모형을 개발(TF 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임. 기술가치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평가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자금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기술가치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농신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금’으로 우수기술기업으로 평가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2.5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

-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낮아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한 정책 대상 농업인에게 신용을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다른 한편으로 농업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신보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신용보증을 정책금융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과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을 차별화하여 구분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적 대상농가의 유형

		사업성 (정책목표)	
		높음(H)	낮음(L)
담보능력 (신용력)	높음(H)	정책금융 영역	금융시장 영역
	낮음(L)	농신보 영역	퇴출영역

2.6 장기적으로는 농업정책금융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농업정책금융기관 설립 필요

- 농업정책금융의 복잡한 전달체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함.
 - 농신보 업무와 농업정책금융의 직접대출까지 관리하는 통합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효율화가 가능함.
 - 그러나 새로운 정부조직의 설립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 관할권이 농식품부만이 아닌 금융위원회 및 해양수산부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책관리권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과제임.

2.7. 규모 있는 전업농가의 경영능력과 민간부문의 자본을 연계하는 등 투자 방식 활성화

□ 농업인의 담보력을 보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민간자금 활용

- 첨단시설농업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는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은 제한적
- 기술력을 갖춘 농업인의 첨단시설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플랫폼 구축이 필요
 - 임대 방식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투자 유도
 - 네덜란드는 환경친화적 온실을 건축하는 비용은 은행이 대출 후 매입하고, 농업인에게 재임대, 환매하는 시스템 운영

□ 플랫폼 사업체계(시범사업³⁰) 도입방안

- 플랫폼 회사에서 농업시설을 매입·임대하고 환매하는 시스템
 - 농업인은 시설 투자에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은 없지만, 현금흐름에 따른 임차료 부담
 - 민간자본은 플랫폼회사를 활용하여 투자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기대
- 자금조달 및 농업시설 임대를 수행하는 플랫폼 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

³⁰ 농업인의 담보력 보완, 채무 부담 경감, 외부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분야 투자처 발굴의 필요성에 따라 매각 후 재임차 방식을 활용한 농업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을 추진

- ① 자금조달: 정책자금 융자, 민간자본(모태펀드) 투자 등
- ② 농지매매·임대: 시설부지(농지)가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으로 매입하거나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임차
- ③ 시설매각·임대: 농업인이 보유한 시설을 운영관리회사에 매각·재임차 또는 운영관리회사가 농업시설을 신축하고 농업인에게 임대

형태로 설립, 운영

- 네덜란드는 금융기관인 라보뱅크에서 매각 후 재임차로 시설농업 지원
- 용자·투자자금을 운영관리회사를 통해 지원

□ 쟁점사항

-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처가 생산분야가 아닌 식품·기자재 중심이었기 때문에 생산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농식품모태펀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임.
- 영농활동 수행에 있어 시설개보수 등 재투자 시, 경영과 자금투자의 완벽한 분리가 어려울 수 있음.
 - 즉, 신규시설의 소유자는 플랫폼 회사이지만, 경영자는 농업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영의 일환으로 개보수 등 재투자를 결정할 때 역할 분담이 필요
 - 플랫폼회사가 참여할 경우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플랫폼회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모델을 사례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적정임대료 수준에 대한 논의
 - 정책자금 이자상환, 펀드배당,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과 플랫폼회사가 협의하여 책정할 필요
 - 임대기간의 설정, 순수익 예치에 관한 내용 역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경험이 없는 농업인으로서의 부담일 수 있어 투자처가 제한적임.

참고 문헌

- 강종만 외. 2004. 「농업정책자금 조달 및 운용방안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기획재정부. 각 연도. 「결산개요(통계편)」.
 기획재정부. 각 연도. 「회계연도 (기금)결산고서」.
 김미복 외. 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외. 1993.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렬. 2014. “국내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지영 외. 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내역」.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농협중앙회. 각 연도. 「금융주요통계」.
 박상원. 2009. 「재정융자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제도연구원.
 박성재. 2012. “농업정책금융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 농식품부 농업정책포럼 발표자료.
 박성재 외. 2000.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외. 2011.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상호. 2013.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KIF 정책보고서. 제2013호. 제 6권. 한국금융연구원.
 유찬희 외. 2015.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현장브리프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외. 2009. 「농업정책금융 선진화 방안 - 전달 및 관리체계 중심으로 -」. GSnJ.
 조윤희. 2015. 「농업보조사업 평가」. 통권 345호.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각 연도. 「농업총조사」.

한두봉 외. 1999. “금융구조조정과 농업금융의 과제”. 농업경제연구 제40권 제2호..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digitalbrain.go.kr/>)

중소기업연구원(www.kosbi.re.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축산발전기금(<http://www.ldf.or.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http://mdss.kostat.go.kr/>).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

한국은행(www.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KDB산업은행(www.kdb.co.kr)

부록 1

중소기업정책금융 정책자금 지원 요약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 사업

- 지원규모: 3.0조
- 용자한도 및 금리
 - 용자한도: 개별기업 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까지 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 가능
- 용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 신청, 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을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용자체계
 - 온라인 용자신청 → 신청 검토 및 상담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접수 → 기업평가/기업진단 및 평가 → 용자결정 → 직접대출/대리대출

- 세부사업내용

부표 1. 정책자금 지원 세부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재창업자금	사업목적	실패한 중소기업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의 기회 부여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용자범위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대출기간	-시설자금: 9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신용대출: 시설 9년, 운전 6년 이내)
대출한도		업체 당 연간 45억 원(운전자금 10억 원)이내 (용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5억 원 이내)	
구조개선 전용자금	사업목적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기회를 부여	
	지원대상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진단 기업,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용자범위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 포함)	
	용자조건	대출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1.05%p
		대출기간	담보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신용 3년(1년 거치, 2년 분할)
대출한도		연간 10억 원(3년 간 10억 이내) (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30억 원 이내 담보부 대출)	
사업전환지원	사업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지원대상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자, 사업전환 대상이 되는 이전 업종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구분		주요내용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융자범위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45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 당 70억 원		
무역조정지원	사업목적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중진공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무역조정 운전자금 신용대출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45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무역조정 융자지원은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 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구분		주요내용	
		<p>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p> <p>-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 당 1억 원</p>	
개발 기술 사업 화 자 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용자범위	<p>-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p> <p>-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p>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p>-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p> <p>-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p>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신성 장 기 반 자 금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 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	
	지원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원지원,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용자범위	<p>-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 조성공사비,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p> <p>-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p>	
	용자조건	대출금리	<p>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p> <p>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p>
		대출기간	<p>-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p> <p>-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p>
대출한도		개별기업 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 원(운전자금 연간 2억 원)	
협 동 화 자 금	사업목적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구분		주요내용
용자범위	- 시설자금: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 시설 도입비 등 - 운전자금: 위 시설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용자조건	대출한도	- 시설자금 70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협업자금	사업목적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 보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중소기업청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협업체의 참가업체 중 협업자금 용자를 희망하는 자
	용자범위	협업사업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시설자금: 70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은 연간 1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용자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희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 원 이내(3년간 10억 원 이내)

		구분	주요내용
수출 금융 지원	사업목적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	
	지원대상	용자제외대상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용자범위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수출품(또는 용역 납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10억 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 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투융 자 복 합 금 융 지 원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용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음	
	지원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용자범위	-	
	용자조건	대출금리	- 이익공유형 대출 · 고정금리: 대출시점에서 아래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p를 차감(고정), 업력 7년 미만은 정책 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영업이익×3%, 단,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의 이익연동이자 면제 -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단리), 만기보장금리 4%(복리)
대출기간		- 이익공유형 대출: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성장공유형 대출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구분		주요내용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 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 당 연간 45억 원(운전자금 10억 원)
	사업목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수제화, 의류·섬유,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인쇄, 귀금속·액세서리 등)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단, 주된 사업의 업종 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용자대상에서 제외
	용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구매), 임차보증금
	용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컨설팅 지원 사업

- 지원규모: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54억 원, 특화형 6억 원(해외전문가 3억, 융합컨설팅 3억)
- 세부사업내용

부표 2. 컨설팅 지원 세부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정혁신 컨설팅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업력·업종 제한 없음 -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공정혁신”을 처방받은 기업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환경경영 등)
	추진절차	건강진단 신청·접수 → 컨설팅 신청·접수/진단·처방 → 적합성평가/추천서발급 → 최종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중간보고 및 점검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비(잔금)지급

	구분	주요내용
해외전문가컨설팅	사업목적	국내 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 및 핵심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을 지원
	지원대상	- 업력 제한 없음 - 제조업 기술 분야
	컨설팅 내용	첨단·핵심 기술 분야 (제품설계 및 해석, 신기술·제품개발, 신공법 도입, 원가·품질개선 등)
	추진절차	신청·접수 → 대면평가 →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중간(수시)점검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지급
융합컨설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합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
	지원대상	- 업력 제한 없음 - 부품·소재, 뿌리산업 영위기업 중 2년 내 정부 R&D과제 성공판정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컨설팅 내용	산업·기술 간 융합 분야 (新사업 및 상품기획, 제품기능 및 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추진절차	신청·접수 → 요건 검토 → 대면평가 →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중간보고 및 중간(수시)점검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비(잔금) 지급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정책금융공사(KDB산업은행)

○ 온렌딩(on-lending)대출 제도

- 온렌딩대출 제도는 전통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제도로서, 중개금융기관(은행)이 자체 금융절차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기업의 기술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자체 금융절차에 따라 대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공사의 장기·저리자금을 전대 받아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적·시장 친화적 정책금융 제도
-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단, '14.7.1~'14.12.31은 6·7등급 지원 불가)
 -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술신용정보 보유기업

- (기술금융과 관련한 TCB평가수수료는 금융회사(은행)가 부담)
- 회사 설립 후 3년 경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연간매출실적이 10 억 원 이상(단, 강원·제주·호남 소재 기업은 동 조건 불요)
 -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단, '14.7.1~'14.12.31은 6·7등급 지원 불가)
 -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이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술신용정보 보유기업
(기술금융과 관련한 TCB평가수수료는 금융회사(은행)가 부담)
 - 세부지원내용

부표 3. 온렌딩(on-lending)대출 제도 세부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일반 (원화) 온렌딩	대출금리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기업 대출스프레드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대출기간	-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대출한도	- 중소기업: 시설 50억 원/운영 20억 원 (기업별 100억 원) - 중견기업: 시설 250억 원/운영 100억 원 (기업별 500억 원) (신용위험 분담비율은 중소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분담 없음)
	지원절차	대출 요청 및 사업계획안 제출 → 중개기관 대출취급 검토 → 기술신용정보평가 요청 → 기술신용정보 제공 → 온렌딩 자금한도확인 요청 → 온렌딩 자금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원리금회수(기한전상환 포함)
외화 온렌딩	대출금리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 기업대출스프레드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대출기간	-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대출한도	- 중소기업: 시설 US\$ 4백만/운영 US\$ 2백만 (기업별 잔액 기준 US\$ 8백만) - 중견기업: 시설 US\$ 20백만/운영 US\$ 10백만 (기업별 잔액 기준 US\$ 40백만) (신용위험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분담 없음)
	지원절차	대출 요청 및 사업계획안 제출 → 중개기관 대출취급 검토 → 기술신용정보평가 요청 → 기술신용정보 제공 → 온렌딩 자금한도확인 요청 → 온렌딩 자금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원리금회수(기한전상환 포함)
특별	대출금리	중개금융기관 대출금리 = 온렌딩대출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 기업대출스프레드 (온렌딩대출 기준금리는 3, 6, 9, 12월 5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구분	주요내용
온 렌 딩	대출기간	-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대출한도	- 중소기업: 시설 150억 원/운영 60억 원 (기업별 300억 원) - 중견기업: 시설 500억 원/운영 200억 원 (기업별 1,000억 원) (신용위험 분담비율은 중소기업 60% 이내, 중견기업 분담 없음)
	지원절차	대출 요청 및 사업계획안 제출 → 중개기관 대출취급 검토 → 기술신용 정보평가 요청 → 기술신용정보 제공 → 온렌딩 자금한도확인 요청 → 온렌딩 자금한도 확인 → 대출실행 → 원리금회수(기한전상환 포함)

주: 특별온렌딩은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을 포함.

자료: KDB산업은행(www.kdb.co.kr).

부록 2

농업부문 주요 용자사업 용자조건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선정
				금리	기한	한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개발사업 주체,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 한센인 정착촌 법인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시설(퇴액비화)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에너지화) 정착촌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발 기금 	2%(민간기업 등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시설구분별로 상이 (개소당 200~7,000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에너지: 농식품부) 개별시설(개별농가·법인체 등), 정착촌구조개선: 시도지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업경영체(일반, 시설 또는 축산업 전업)	농지 등 매입·임대·환매 등	농지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중 매년 임대료 납부(매입가격의 1%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7년 (1회 평가통해 3년이내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금액 농업인 10억 원, 농업법인 15억 원 이하 	한국농어촌공사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과원매도·임대대상자 과원매입·임차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원매매 과원임대차 	FTA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원매매: 2% 과원임대차: 무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원매매: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균분상환·거지식상환 과원임대차: 5~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원매매: 제곱미터당 12,100원(과수목 포함) 과원임대차: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임차료 	한국농어촌공사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 전업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농협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창업자 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거치 10년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 원 한도 이내 	시·군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 선정
				금액	기한	한도	
(이차보전)	가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기업 위해 '농어촌' 지역 이주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15년 1월 1일 기준 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주택 구입·신축: 2%	상환	○ 주택 구입·신축: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용자 30%) ○ 신재생에너지시설 - 공기열냉난방시설설치(용자30%) - 목재펠릿난방기설치(용자20%) - 지열냉난방시설(용자 10%) - 폐열제이용시설(공모/단독사업)(용자10%) - 지중열냉난방시설 (용자 10%)	예특 회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적용단가를 적용한 한도 설정	시도/시군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이차보전)	농업인	○ 농업경영자금 ○ 축산경영자금 ○ 재해대책경영자금	공공 자금 관리 기금, 농업 협동 금융 기관 자체 자금	○ 농업경영자금: 1년(신규인삼 식재자금은 연 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자금: 1년 ○ 재해대책경영 자금: 1년(1년 연장가능)	○ 농업경영자금: 농가당10백만 원 ○ 축산경영자금: 농가당10백만 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농식품부장관결정금액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원 이상 5천만 원 이내 (별인 1억 원)	농협은행(일선조합)에서 자금 재배정	
농업원예축산융합가공사업	원예·축산업자, 농산물가공업체,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친	○ 시설자금 ○ 개보수자금	농협 자금	○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관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대출취급기관, 행정기관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 선정
				금액	한도	
등 지원 자금 지원 (이차보전)	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 운영자금		기한 분상환(원예, 가공, 우량종자 등),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축산, 유리온실, 칠골온실) ○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5천만 원 미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5천만 원~1억 원 미만),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1억 원 이상) ○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인삼식재자금은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 운영자금: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관광농원/농촌민박업자	○ 시설자금 ○ 개보수자금 ○ 운영자금	농협 자금	2~3%	○ 시설자금: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5천만 원 미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5천만 원~1억 원)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총사업비의80%이내 ○ 운영자금: 대출취급기관의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선정
				금리	한도	
				기한 미만, 3년 까지 7년 구분상환(1 억 원 이상) ○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신제품은 1년 거 치 4~7년 구분 상환, 중고는 잔 여내 용연수에 따라 상이 ○ 시설자금: 3년 까지 1년 간 분상환 ○ 개보수자금: 1년 까지 4년 구분상환 ○ 운영자금 - 농기계생산원 자재구입비축 지원사업: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자금: 1년 까지 4년 구분상환		
농기계구 입 / 농 기 계 생 산 및 사후 관리지원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 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 리 관련 업체	○ 농기계구입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 ○ 농기계생산사업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2~3% - 농기계생산 원자재구입 비축지원은 금리 고정/ 변동 선택 가능 농협 자금	○ 농기계구입자금 - 신제품: 거래가격의 80%이내 ○ 농기계보관창고사업: 총사업비의 90%이내 ○ 농기계생산시설·설비지 원, 개보수자금, 운영자 금: 농식품부에서 농협 은행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대출취급기관
꿀·농 가공산업 육성	꿀, 농용 가공식품 업체	사업 운영 자금	2.5~3% - 농업경영체 가금리 고 정/변동 선 택가능 농협 자금	개소당 5억 원 한도 원칙 - (사)한국양봉협회, (사) 한국양류협회에서 농 협은행에 통보한 업체 별 한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선정
				금리	기한	한도	
쌀가공 산업] 육성지원	쌀가공식품 생산 업체, 정부 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 업체	○ 시설자금 ○ 개보수자금 ○ 운영자금	농협 자금	2.5~3%	○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분상환 ○ 개보수자금: 2 년 거치 3년 분상환(지 원금액 5천만 원 미만), 3년 거치 5년 분상환(지 원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총사업비의 80% 이내 ○ 운영자금: 농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금액 이내	-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체, 농업법인	○ R&D에 대한 실용·산업 화를 위한 운영자금 ○ 평가비	농협 자금	2.5~3%	2년 거치 3년 분상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 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 원 이내	행정기관(시· 군·구, 농업기 술센터 등)
미곡종합처리장 비 매입자금 지 원(이자보전)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농가별 확보(매취 및 수탁) 자금	금융 기관 자금 (이자 보전)	0~3% - RPC 경영 성과 결과에 따라 차등	1년 이내 상환	RPC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금리(0~3%) 차등 지원	시도
농어촌주택개발 사업(이자보전)	농어촌 주민, 농어촌 지역으 로 이주 희망자	○ 단독주택개발 ○ 자력개발	농협 자금 (정부 이자 보전)	2%	1년 거치 19년 분상환/3년 거 치 17년 분상환 환 중 선택 가능	신축 세대당 5,000만 원 (부분개발은 1/2)	시군구
농업경영회생자 금지원(이자보 전)	농업인, 농업법인	○ 경영회생자금(농업용대출 원리금) ○ 농업시설인수자금	농협 은행 자금	1%(이자 는 1 년 후 추)	3년 거치 7년 분 상환	10억 원(농업법인: 15억 원) 초과 불가(경영회생자 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경영평가위원 회가 지원계 획 심의 확정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또는 상호 금융 자금	용자조건			대상자선정
				금리	기한	한도	
농지구묘화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대금 ○ 농지의 장기임대차비용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사업: 1%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무이자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가격차액, 환지청산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사업: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지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지원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0년 분할납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사업: 논 평당 30천원, 밭 35천원, 소유규모 기준 5~20ha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지원상한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어촌공사(지사 심의회)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업인	매입대상 농지 매입비	농지 기금	무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임대(평가 후 연장가능) ○ 줄임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지역 학부모 자녀 및 농어업 종사 대학생 본인 중 기준 충족자	등록금 신청액 전액	농특 회계	무이자		당해학기 대학 통보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사료산업융합지원	자료제조업 등록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사료제조 시설자금	추발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원료구매자금: 2%(생산자 단체 3%) ○ 사료제조시설자금: 2%(생산자단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7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범위 내 - 사료원료 구매자금: 사료원료 구매 운영자금 미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대상	사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선정
				금리	기한	한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전문임업인,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임산물 생산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영기반 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 산림수목원·휴향림 조성·운영(산림수목원 조성, 산림자연휴양림 조성) ○ 산양산 생산, 해외산림자원 개발 ○ 전문임업인육성 ○ 단기산림소득지원 ○ 조림용 모목생산 ○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수출원자재 구매, 임업기계화,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 산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조합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특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로상이(2년 거치 3년 상환, 20년 거치 15년 상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용자는 사업비의 80~100%(용자기간 15년 초과 장기성 자금) ○ 대출기관 용자는 사업비의 20~100%(용자기간 15년 이하 단기성 자금, 대출기관용자-이차보전대상사업)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종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 선지자금(운전자금) ○ 수급안정사업으로 일원화한 품목 매취자금 ○ 자가생산을 위한 영농자금(농자재구입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600억 원 내외(최소 한도: 10억 원, 배정단위: 5억 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촉진사업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지원 ○ 결제자금지원 ○ 정가·수의매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범위 내 배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명	사업대상	사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선정
				금리	기한	한도	
공관장(청과) 출하 촉진 사업	농협회원조합공관장 및 산지공관장, 농협회원조합산지공관장 소속 증도매인	○ 신도금지원 ○ 결제자금지원 ○ 정가·수의매매지원	농안 기금	2.5~3%	1년 상환	예산 범위 내 배정 ○ 신도금: 전년도 출하실적의 80%이내 ○ 경제자금: 전년도 경매실적의 40%이내, 300백만 원 이내(증도매인, 매매참가인),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의 40%이내(소매유통업체)	농협중앙회
	하체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화훼공관장,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자	○ 신도금 ○ 결제자금	농안 기금	2.5~3%	1년 상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매취 사업	소비자생협, 영농조합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농안 기금	2.5~3%	1년 상환	20억 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계열화경영체: 정책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영체 ○ 밀: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생산하는 가공업체	○ 계열화경영체: 국내산 쌀 식량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구매 ○ 가공용 밀: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	○ 계열화경영체: 국내산 쌀 식량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구매 ○ 가공용 밀: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	농안 기금	2.5~3%	1년상환	○ (계열화경영체)경영체 당 8억 원 이내 ○ (밀)업체당 연간 30억 원 이내
소비자참여 직거래 활성화 사업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작업장 등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농안 기금	2.5~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개소당 400백만 원 이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외식 종합 자금사업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 농식품시설현대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외식업체육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농안 기금	2~3%	○ 농식품시설현대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 외식업체육성: 운영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억 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3년상환, 운영자금 1년 이내	○ 농식품시설현대화: 50억 원 ○ 외식업체육성: 운영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억 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3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선정
				금액리	기한	한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농가, 농업법인	고품질 과실생산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FTA 기금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집행	시/군
	원에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 용자금	FTA 기금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원예전문단지(10ha기준): 70억 원 ○ 일반원예시설(1ha 기준): 7억 원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집행	시·도
인삼·약용 작물 계열화 사업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계약체배 자금 ○ 구매자금	농안 기금/농특 회계(이차 보전)	○ 계약체배 자금: 무이자 ○ 구매사업: 연리 2.5~3% 인삼종자 수확은 무이자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	○ 인삼 15,800백만 원, 약용작물 350백만 원 ○ 인삼 37,400백만 원, 약용 1,550백만 원	농협중앙회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축발 기금	2%	2년 거치 3년 상환	○ 농업인: 5억 원 이내 ○ 경영체: 자기자본의200% 이내 ○ 생산자단체: 자기자본의 400%이내	시장/군수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초지조성 ○ 기반시설	축발 기금	2%	3년 거치 7년 상환	○ 농업인: 5억 원 이내 ○ 경영체: 자기자본의200% 이내 ○ 생산자단체: 자기자본의 400%이내	시장/군수
	가공·유통 시설지원	기존 TMR 업체의 가공장 운영자금	축발 기금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신규지원은 계소당 9억 원 이내(총사업비 30억 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 선정
				금리	기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TMR 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9천 만 원 (연간 25개소 내외 대상)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터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 원, 동시운영업체는 8억 원 (연간 25개소 내외 대상) 	
조사료 전 문생산단지 조성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기계·장비 구입비	축발 기금 2%	2년거치 3년상환	개별사업의 기준 및 범위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창업(후계)농업 경영인육성사업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반조성비용 - 경종분야: 농지구입, 시설 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정보화) - 축산분야: 토지구입, 시설 설치, 운영자금(정보화) 	농특 회계 (이차 보전)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2억 원	시도	
첨단온실신축 지원 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온실 신축 및 계속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온실 1~2% (신규 규모에 따라) ○ 비닐온실 1% ○ 지자체 개발유형 2% 상환 ○ 보조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거치 10년상환 ○ 3년거치 7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온실 30억 원 ○ 비닐온실 7억5천만 원 	시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산농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등	FTA 기금	3년 거치 7년 상환	축종, 시설, 농가규모에 따라 220~5,000백만 원	시도	
축산경영종합 자금사업	축산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운영지원 ○ 브랜드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2~3%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3년거치 7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의 500% 이내 ○ 농·축협조합 이외의 경영체: 50억 원 이내 또 	농식품부	

사업명	사업대상	용자 지원용도	제원	용자조건			대상자 선정
				금리	기한	한도	
			기관 자금 (이차 보전)	2% 농축협 포함 3%)		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 이내 ○ 브랜드 판매시설: 개소당 사업비 20억 원 이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업체 등 산지유통업체	선급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농안 기금 (식품 산업 육성 (원물 확보 자금))	2.5%	1년 상환	대상자별 40억 원	aT
한우치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15 신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 식육관매점포 건축, 건물 매입, 건물임차료 ○ 냉장, 냉동 판매, 포장, 인테리어 시설 등 ○ 농기계구입,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용	축발 기금	2.5%	3년거치 7년 분상환	개소당 6억 원(용자 3)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 해외 현지법인 지분 참여 비용 등	농지 기금	2%	5년 거치 10년 분상환	지원대상 소요사업비 70% 이내 원칙	농림축산식품부 농자심의회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지자체, 대학,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농축협, 대규모 민간 승마시설, 전문 기관	승마시설(공공/민간): 신설·개보수	축발 기금	3%(농업인 2%)	3년 거치 7년 분상환	○ 공공기관: 4억 원 ○ 민간기관: 2억1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주: 2015년 사업시행지침서 기준(2015년 8월, 2016년 1월 금리인하 분 반영).